

국세외수입 미수납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 법·제도적 측면

- 2021. 01.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 상 현

국세외수입 미수납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법·제도적 측면

2021. 0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제 출 문

국회예산정책처장 귀하

이 보고서를 “국세외수입 미수납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법·제도적 측면”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01

책임연구원: 김상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연구원: 손원익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객원교수)

연구보조원: 이유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국세외수입의 정의 및 미수납액 관리	4
가) 국세외수입의 정의	4
나) 국세외수입의 범위	4
다) 미수납액 관리	5
II. 국세외수입 현황 분석	7
1. 국세외수입 추이	7
2. 성질별·세부항목별 국세외수입 및 부족수납액 추이	9
가) 성질별 국세외수입 추이 및 예·결산	9
나) 성질별 세부 요인 분석	12
3. 국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 및 주요항목별 분석	19
가) 국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	19
나) 주요항목별 분석	22
4. 국세외수입 관련 법령 분석	34
가) 적용대상	35
나) 징수	36
다) 체납절차	41
라) 업무의 정보화	46
마) 진단·평가 체계 :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석·진단	48
바) 지방세외 수입 관련 법체계의 한계점	50
사) 시사점: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의 장점 차용 및 한계점 보완	51
5. 국세외수입 관련 조직 분석	53
가) 국세외수입 관리 조직 및 인력	53
나) 지방세외수입 관리 조직 및 인력	57
III. 지방세외수입 관련 제도 및 해외사례 분석	62
1. 지방세외수입 관련 제도 분석	62
가) 지방세외수입의 구조 및 규모	62
나) 지방세외수입 정보공개: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및 통계정보	65

다) 지방세외수입 평가보고서 및 인센티브: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65
라)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69
2. 해외사례	72
가) OECD 국가	72
나) 미국	76
다) 일본	84
라) 독일	91
마) 시사점	93
IV. 국세외수입 관리체계 및 문제점 분석	97
1. 관리법의 미비	97
2. 환류체계의 미비	101
3. 징수 및 체납 관련 동기 부족	105
가) 징수자의 동기	106
나) 체납자의 동기	107
4. 관리 역량의 부족	108
5. 정보시스템의 미비	110
V. 국세외수입 관리·개선방안: 법·제도 과제	114
1. 기본방향 및 우선과제	114
2. 구체적 개선방안	115
가) 관련법체계의 정비	115
나) 정보시스템의 구축	117
다) 조직 및 인력 확충	120
라) 환류시스템 정비	121
마) 적절한 인센티브 체계의 구축	122
3. 장기적 관점의 방안	124
VI. 결론	125
[별첨]	127
[참고문헌]	131

표 목 차

<표 I-1> 총수입 동향: 액수(전기 대비 증감률)	1
<표 I-2> 국세외수입의 예산대비 초과수납 규모 추이	3
<표 I-3> 세입과목기준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	4
<표 I-4> 국세외수입에 포함되는 9개 관의 내용	5
<표 II-1> 국세외수입 결산추이: 회계별, 2011~2019년	7
<표 II-2> 국세외수입의 예산대비 과소수납 규모 추이	8
<표 II-3> 국세외수입 성질별 결산 추이 및 전년 대비 증가율: 2011~2019	10
<표 II-4> 최근 3년간 성질별 국세외수입 예산 및 결산: 2017~2019	11
<표 II-5>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결산 현황: 2017~2019	12
<표 II-6>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결산 현황: 2017~2019	13
<표 II-7> 재산수입 결산 현황: 2017~2019	14
<표 II-8> 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2017~2019	15
<표 II-9>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결산 현황: 2017~2019	16
<표 II-10> 관유물매각대 결산 현황: 2017~2019	17
<표 II-11> 용자 및 전대차관원금 회수 결산 현황: 2017~2019	18
<표 II-12>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 결산 현황: 2017~2019	19
<표 II-13> 국세외수입 성질별 징수율 분포(2019)	20
<표 II-14> 국세외수입 미수납액 상위 18개 항목	21
<표 II-15> 국세청, 경찰청, 고용노동부 최근 4년간 가산금 결산 현황: 2016~2019	22
.....	22
<표 II-16> 2019년도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현황	24
<표 II-17>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유별 미수납 금액(2019)	25
<표 II-18> 경찰청 과태료 최근 6년간 결산 내역: 2016~2019	25
<표 II-19> 변상금 미수납 금액	26
<표 II-20> 소관별 법정부담금 결산 현황: 2017~2019년	29
<표 II-21> 해양수산부 면허료 및 수수료 최근 5년간 결산 내역: 2015~2019	31
<표 II-22> 2019년도 해양수산부 면허료 및 수수료 미수납액 명세	31
<표 II-23> 대법원 면허료 및 수수료 최근 5년간 결산 내역: 2015~2019	32

<표 II-24> 잡수입 미수납액 현황: 1억원 이상, 2년 연속 기준	33
<표 II-25>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시행 전후 비교	34
<표 II-26> 지방세외수입과 국세외수입의 비교	51
<표 II-27> 국세외수입 · 지방세외수입 징수조직의 비교	61
<표 III-1> 지방세외수입 구조	62
<표 III-2>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절차 (2019년)	66
<표 III-3> 분석지표 체계(2019년)	67
<표 III-4> 2019년 지방세외수입 분석 · 진단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	68
<표 III-5> OECD 연방형 국가의 세입현황	72
<표 III-6> OECD 단일형 국가의 세입현황(2011년)	73
<표 III-7> OECD 국가 국세외수입 현황(중앙정부)	74
<표 III-8> OECD 국가 GDP 대비 국세외수입 현황(중앙정부)	75
<표 III-9> 한국의 IMF항목별 국세외수입 변화	76
<표 III-10> 미국의 일반 세외수입 분류 및 항목	76
<표 III-11> 미국의 정부유형별 경상적 세외수입	78
<표 III-12> 미국 정부유형별 기타 세외수입	79
<표 III-13>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외수입현황	80
<표 III-14> 2018년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외수입현황	81
<표 III-15> 2018년 미국 주정부 세입변화	83
<표 III-16> 일본 채권관리 표준 조례안과 우리나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비교	87
<표 IV-1>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 지표(2015)	103
<표 IV-2> 2015~2018 (4년간)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비교	104
<표 IV-3> 예산성과금 등급 및 지급액 기준	107
<표 IV-4> 현행 법령상 간접강제수단의 도입 현황	108
<표 IV-5> 세무부서내 세외수입 총괄 및 체납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미설치	109
<표 IV-6> 세외수입 전담조직 설치 효과	110
<표 IV-7> 국세외수입 성질별 징수시스템	111
<표 IV-8>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시 주요 개선 사항	113
<표 V-1> 국세외수입 결산 추이 및 전년 대비 증가율: 2011~2019	114

그림 목 차

<그림 I-1> 총수입 대비 항목별 비중	2
<그림 II-1> 국세외수입의 예산대비 초과수납규모 추이	8
<그림 III-1> 세외수입과 지방세 규모	63
<그림 III-2> 지방세외수입 연도별 신장추세	64
<그림 III-3>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개요	71
<그림 IV-1> 지방세외수입법 제정 후 체납액 및 징수율 변화 추이(억원, %)	100
<그림 IV-2> dBrain의 재정범위	112
<그림 V-1> 국세외수입 납부포탈 신규구축 방안 및 dBrain 연계 방향	118
<그림 V-2> 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전략체계도	119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국세외수입은 세금 이외 금전채무의 성격을 가지며 국가재정을 이루는 요소이나 2015년부터 국세수입보다 국세외수입의 증가율이 낮음
 - 국세외수입이란 총수입에서 세외수입을 제외한 것을 의미하며, 세외수입과 기금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음
 - 세외수입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그리고 2019년에 전년 대비 수입이 감소함
 - 기금의 경우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년 대비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국세외수입(세외수입과 기금의 합)은 국가총수입의 약 40%를 차지하며 2013년 이후 그 비중이 감소추세에 있음

<표 I -1> 총수입 동향: 액수(전기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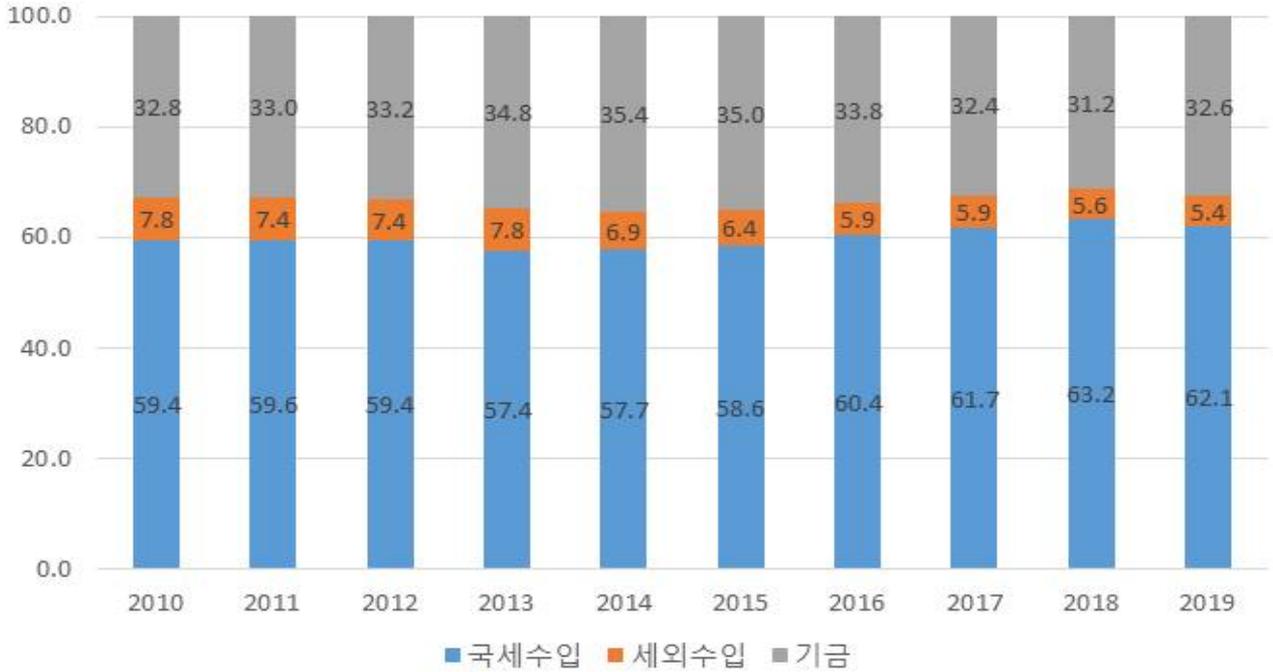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세 수입	177.7 (-)	192.4 (8.3)	203 (5.5)	201.9 (-0.5)	205.5 (1.8)	217.9 (6)	242.6 (11.3)	265.4 (9.4)	293.6 (10.6)	293.5 (0)
세외 수입	23.5 (-)	24 (2.1)	25.3 (5.4)	27.3 (7.9)	24.6 (-9.9)	23.7 (-3.7)	23.5 (-0.8)	25.5 (8.5)	26 (2)	25.3 (-2.7)
기금	98.2 (-)	106.5 (8.5)	113.3 (6.4)	122.6 (8.2)	126.2 (2.9)	130.2 (3.2)	135.6 (4.1)	139.5 (2.9)	145.1 (4)	154 (6.1)
총수입	299.4 (-)	322.9 (7.8)	341.6 (5.8)	351.8 (3.0)	356.3 (1.3)	371.8 (4.4)	401.7 (8.0)	430.4 (7.1)	464.7 (8.0)	472.8 (1.7)

출처: NABOSTATS

- 국가총수입 대비 국세외수입의 비중은 매년 약 40% 내외임
 - 2013년 이후 국가총수입 대비 국세외수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에 증가하였음
 - 국가총수입 대비 세외수입의 비중은 2013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음
 - 국가총수입 대비 기금의 비중은 2014년에 가장 높았으며, 이후 감소하다가 2019년에 소폭 증가하였음

<그림 I -1> 총수입 대비 항목별 비중



출처: NABOSTATS

- 저성장세, 인구고령화, 임금증가세 둔화, 저금리 기조 등은 국세외수입을 포함한 국가총수입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음
- 국가 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총수입 관리의 필요성이 강화됨
- 국세외수입은 꾸준히 미수납액 및 부족수납이 문제되고 있어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을 관리하는 방안을 통해 국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여 재정여건에 도움을 주고자 함

<표 I -2> 국세외수입의 예산대비 초과수납 규모 추이

(단위: 조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세외수입 (A+B)	3.9	1.1	-0.4	-2	-8	-9.2	-6.9	-8.5	-2.3
세외수입 (A)	-0.5	-3	-3.7	-2.6	-4.6	-3.6	-0.9	-1.2	-1.6
기금 (B)	4.2	3.8	3.3	0.7	-3.4	-5.5	-6.1	-7.3	-0.7

주: 1.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큰 경우(+)로, 반대의 경우(-)로 표시

2.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해는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산정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국세외수입은 조세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징수와 체납관리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재정당국이 2016년 ‘제 22차 재정전략협의회’ 에서 국세외수입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별다른 대안이 도출되지 않았음

○ 국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원화되어 있지 못함

○ 국세외수입의 정보공개, 정보 일원화, 징수실적관리 등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미흡함

2. 국세외수입의 정의 및 미수납액 관리

가) 국세외수입의 정의

- 국세외수입은 정부의 재정수입에서 국세수입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의미함
 - 국가재정법 제7조 제2항 제4호의4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수입은 세입(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으로 이루어짐
 -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각 연도 총수입 결산보고서에서 총수입을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으로 나누고 국세외수입의 구성요소를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으로 나누고 있음

나) 국세외수입의 범위

- 세입과목 구분에 따른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표 I -3> 세입과목기준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

국세수입	국세외수입
내국세(01)	사회보장기여금
과세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방위세	재산수입
교통·에너지·환경세	경상이전수입
양여세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교육세	수입대체경비수입
농어촌특별세	관유물매각대
종합부동산세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자료: 류덕현 외(2017)

□ 위 분류에 따른 국세외수입 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I -4> 국세외수입에 포함되는 9개 관의 내용

9개 관	구성
재산수입	토지 건물대여료나 정부출자 수입 등
경상이전수입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법정부담금
재화및용역판매수입	병원, 교도소 수입, 입장료, 면허료, 입학금 및 수업료, 항공항만 용수 수입 등
수입대체경비수입	면허, 수수료, 관유물 대여료, 잡수입 등
관유물매각대	고정자산, 토지 및 무형자산, 재고자산, 유동자산매각대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기업 자체 수입으로 특별회계 귀속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국공 수입이나 민간차입금, 유가증권 매각대 등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원금 회수(통화, 비통화금융기관), 전대차관 회수 등
사회보장기여금	기금으로 귀속

다) 미수납액 관리

□ 국세외수입 징수율은 예산대비 수납액과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두 지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국세외수입의 현황은 열린재정, 기획재정부 경제·재정 수첩, 국회예산정책처 총수입 결산분석에서 예산대비 초과수납 혹은 부족수납액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음. 이는 예산 대비 수납액을 나타냄
- 예산은 추계를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기존 회계연도의 결산현황 등을 반영하게 되며 미수납금액과는 차이가 있음

- 본 보고서는 국세외수입 미수납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세외수입 징수율의 제고를 통한 재정 건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함
 - 미수납금액은 징수결정금액에서 불납결손금액과 수납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됨
 - 그러나 다양한 국세외수입 항목 중에서 징수결정금액이 사건의 발생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는 경상이전수입의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가산금이나 재화및용역판매수입의 면허료, 수수료 등으로 한정됨
 -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대비 징수액을 통해 국세외수입 실적을 관리하고 있음
 - 따라서 단순히 미수납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외수입의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II. 국세외수입 현황 분석

- 국세외수입의 미수납관리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현재 추이 및 관련 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국세외수입 규모의 추이 및 과소수납 규모를 살펴 봄
 - 성질별 국세외수입 추이를 살펴봄. 특히 미수납액이 유의미한 항목들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살펴보고 미수납이 발생하는 요인을 분석함
 - 국세외수입 관련 법령을 최근 도입·개정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과 비교하여 분석함
 - 국세외수입 관련 조직을 지방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조직과 비교하여 분석함

1. 국세외수입 추이

-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2011년 130.5조원에서 2019년 179.3조원으로 증가하였음
 -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국세외수입 가운데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약 82%에서 2019년 약 86%로 증가함
 - 기금의 비중이 상승한 것은 사회보장기여금의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표 II -1> 국세외수입 결산추이: 회계별, 2011~2019년

(단위: 조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세외수입 (A+B+C)	130.5	138.6 (6.2)	149.9 (8.2)	150.9 (0.6)	153.9 (2.0)	159.1 (3.4)	165.1 (3.7)	171.2 (3.7)	179.3 (4.7)
일반회계 (A)	9.1	9.9 (8.8)	9.9 (0.0)	9.2 (7.1)	8.4 (8.7)	9.4 (11.9)	11.0 (16.9)	10.7 (△2.7)	9.5 (△11.2)
특별회계 (B)	14.9	15.4 (3.4)	17.5 (13.6)	15.4 (12.0)	15.3 (0.6)	14.2 (△7.4)	14.5 (2.7)	15.3 (5.5)	15.7 (2.6)
기금 (C)	106.5	113.3 (6.4)	122.6 (8.2)	126.2 (2.9)	130.2 (3.2)	135.6 (4.1)	139.5 (2.9)	145.1 (4.0)	154.0 (6.1)

주: 1. 세입세출외로 운용되는 국고통합계정 여유자금 운용수익은 제외

2. ()는 전년대비 증가율 값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재구성

□ 국세외수입은 2013년 이후 7년 연속 예산 대비 과소수납 되고 있음

- 국세외수입은 2011년과 2012년 예산 대비 초과수납 되었으나, 2013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과소수납이 이루어짐
- 미수납관리는 재정 건정성뿐만 아니라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

<표 II -2> 국세외수입의 예산대비 과소수납 규모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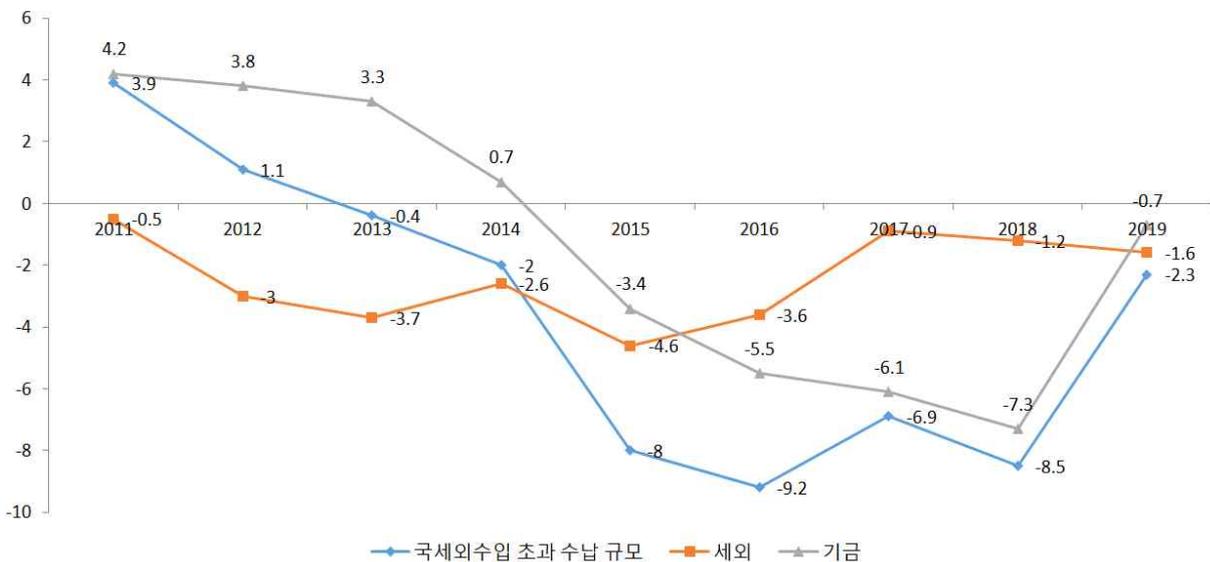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세외수입 (A+B)	-3.9	-1.1	0.4	2	8	9.2	6.9	8.5	2.3
세외수입 (A)	0.5	3	3.7	2.6	4.6	3.6	0.9	1.2	1.6
기금 (B)	-4.2	-3.8	-3.3	-0.7	3.4	5.5	6.1	7.3	0.7

- 주: 1.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큰 경우(-)로, 반대의 경우(+)로 표시
 2.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해는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산정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그림 II -1> 국세외수입의 예산대비 초과수납규모 추이

(단위: 조원)



- 주: 1.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큰 경우(+)로, 반대의 경우(-)로 표시
 2.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해는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산정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성질별·세부항목별 국세외수입 및 부족수납액 추이

가) 성질별 국세외수입 추이 및 예·결산

- 국세외수입의 성질별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기 대비 증감률이 상이하게 나타남
 - 전체 국세외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 대비 2019년에 48.8조원(37%) 증가함
 - 국세외수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은 30.7조원(79%) 증가하여 국세외수입의 증가에 기여함. 또한 사회보장기여금의 연평균 증가율이 국세외수입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여 사회보장기여금이 국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9.8%에서 2019년 38.8%까지 증가함
 - 경상이전수입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기여금수입과 각종 부담금수입의 증가에 따라 2011년 대비 2019년에 11.5조원이 증가함
 -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은 우정사업의 사양화와 저금리에 따른 우체국예금의 영업수입 감소로 2011년보다 0.5조원 증가한 6.7조원이 수납되는데 그침

<표 II -3> 국세외수입 성질별 결산 추이 및 전년 대비 증가율: 2011~2019

(단위: 조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세외수입	130.5	138.6	149.9	150.9	153.9	159.1	165.1	171.2	179.3
	-	6.2	8.2	0.6	2.0	3.4	3.7	3.7	4.7
사회보장 기여금	38.9	43.9	46.1	49.8	53.1	56.9	60.5	64.9	69.6
	-	12.9	5.0	8.0	6.6	7.2	6.3	7.3	7.2
기업별회계 영업수입	6.2	6.4	7.0	6.2	6.2	5.8	5.7	6.3	6.7
	-	3.2	9.4	△11.4	0.0	△5.8	△2.4	10.9	7.0
재산수입	24.5	25.2	24.6	23.1	22.1	24.4	27.6	28.7	29.0
	-	2.9	△2.4	△6.1	△4.3	10.4	13.0	1.8	3.3
경상이전수입	24.5	25.6	26.9	29.5	31.8	33.6	36.1	37.7	36.1
	-	4.5	5.1	9.7	7.8	5.5	7.6	4.3	△4.1
재화및용역 판매수입	6.7	7.1	7.5	7.7	8.4	8.1	8.7	8.6	9.8
	-	6.0	5.6	2.7	9.1	△2.8	7.2	0.9	12.9
수입대체경비 수입	0.3	0.3	0.3	0.4	0.4	0.4	0.4	0.4	0.4
	-	0.0	0.0	33.3	0.0	3.7	△2.4	6.5	0.4
관유물매각대	2.5	3.7	3.3	2.7	3.3	3.4	3.2	2.7	2.7
	-	48.0	△1.08	△18.2	22.2	3.1	△5.8	△15.0	0.1
용자및전대 차관원금회수	26.7	26.3	33.3	30.7	28.7	26.4	22.8	22.4	24.9
	-	△1.5	26.6	△7.8	△6.5	△7.8	△13.7	△1.7	11.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0.1	0.1	0.7	0.8	0.0	0.1	0.1	0.1	0.1
	-	△30.7	1042.3	11.6	△99.1	1,598.7	△9.9	△48.5	△6.2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회예산정책처 총수입 분석 재구성

□ 국세외수입의 3년간 성질별 예산대비 결산의 오차율은 다음 과 같음

- 사회보장기여금,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의 경우 3년 연속 부족수납 되었음

<표 II-4> 최근 3년간 성질별 국세외수입 예산 및 결산: 2017~2019

(단위: 조원, %)

	2017			2018			2019			오차율 평균 (절댓값)	오차율 평균 (단순)
	예 산	결 산	오차 율	예 산	결 산	오차 율	예 산	결 산	오차 율		
사회보장 기여금	62.0	60.5	△2.5	69.3	64.9	△6.4	69.7	69.6	△0.3	3.1	△3.1
기업별회계 영업수입	7.1	5.7	△20. 7	6.9	6.3	△8.9	6.9	6.7	△2.4	10.7	△10.7
재산수입	27.0	27.6	2.1	27.8	28.1	1.2	29.1	29.0	△0.1	1.1	1.1
경상이전수입	35.3	36.2	2.5	36.3	37.7	3.6	37.2	36.1	△2.9	3.0	3.0
재화및용역 판매수입	8.9	8.7	△1.5	9.1	8.6	△5.5	9.9	9.8	△1.3	2.8	△2.8
수입대체경비 수입	0.3	0.4	8.6	0.4	0.4	9.8	0.4	0.4	10.3	9.6	9.6
관유물매각대	3.8	3.2	△16. 3	2.8	2.7	△2.8	3.1	2.7	△12. 7	10.6	△10.6
용자및전대 차관원금회수	27.7	22.8	△17. 6	27.1	22.4	△17. 2	25.6	24.9	△2.5	12.4	△12.4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0.1	0.1	73.7	0.1	0.1	△1.1	0.0	0.1	94.4	61.4	50.7
합계	172. 0	165. 2	△4.0	179. 6	171. 2	△4.7	181. 6	179. 3	△1.3	3.4	△3.4

- 주: 1. 예산액은 추가경정예산액 기준
 2. 오차율=(수납액-예산액)/(예산액)
 3. 오차율 평균(절댓값)은 3년 오차율 절댓값의 산술평균
 4. 오차율 평균(단순)은 오차율의 산술평균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회예산정책처 총수입 분석 재구성

나) 성질별 세부 요인 분석1)

- 사회보장기여금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의 실적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 했으나, 모두 3년간 부족수납 되었음
-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 수나 기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소득의 증가로 실적은 개선되었으나, 당초 계획만큼은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족수납이 발생함
- 사학연금은 월평균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2018년 기여금 보험료율이 8.75%로 인상되면서 실적이 증가하였지만, 당초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여 부족수납 되었음
- 고용보험은 2018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보험료율 인상이 2019년 10월로 연기되어 부족수납이 발생함
- 산재보험은 적용근로자수 및 보수총액 증가로 실적이 개선되었으나, 당초 예상만큼 증가 하지 않아 부족수납 되었음

<표 II -5>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결산 현황: 2017~2019

(단위: 억원, %)

	2016 실적	2017		2018		2019	
		예산(A)	실적(B)	예산(A)	실적(B)	예산(A)	실적(B)
사회보장기여금	568,891	620,095	604,605	692,729	648,537	697,472	695,504
		△15,491(△2.5)		△44,192(△6.4)		△1,651(△2.4)	
• 국민연금	390,359	424,186	417,849	464,100	443,735	471,178	478,001
		△6,337(△1.5)		△20,365(△4.4)		2,910(74.6)	
• 사학연금	25,250	29,056	27,404	31,129	29,433	32,462	31,151
		△1,651(△5.7)		△1,696(△5.4)		△4,856(△8.5)	
• 고용보험	90,401	97,503	95,009	124,184	101,841	116,154	110,894
		△2,495(△2.6)		△22,343(△18.0)		83(4.1)	
• 산재보험	62,881	69,350	34,342	73,316	73,528	77,080	75,458
		△5,007(7.2)		212(0.3)		211(3.5)	

주: 1. 예산액은 추가경정예산액 기준
 2. 각 항목의 두 번째 행은 추경예산 대비 실적액의 초과수납액을 의미하며 괄호 안은 예산 대비 초과 수납액의 비율을 나타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회예산정책처 총수입 분석 재구성

1) 국회예산정책처 2017-2019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을 참고하여 작성함

□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은 3년 연속 부족수납 되었는데, 이는 주로 우정사업수입의 부진에 기인함

- 우정사업수입의 경우 저성장·저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사업수입 감소, 우편 사업의 원가보상률 하락,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의 발송물량 축소, 국제특급우편(EMS), 물량 감소 지속, 우편요금 인상 시행시기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부족수납이 발생함
- 양곡사업의 경우 2017년은 부족수납, 2018~2019년은 초과수납 되었는데 주로 쌀값의 상승 여부 및 미곡 수급여건에 따른 공매 실시 여부가 실적을 결정하므로 예측이 어려움
- 조달사업수입 및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의 경우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추경예산대비 증감액도 크지 않음

<표 II -6>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결산 현황: 2017~2019

(단위: 억원, %)

	2016 실적	2017		2018		2019	
		예산(A)	실적(B)	예산(A)	실적(B)	예산(A)	실적(B)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57,856	71,486	56,715	69,096	62,913	68,955	67,304
		△14,771(△20.7)		△6,183(△8.9)		△1,651(△2.4)	
• 양곡사업수입	4,692	5,854	4,799	4,522	9,916	3,903	6,813
		△1,055(△18.0)		5,394(119.3)		2,910(74.6)	
• 우정사업수입	45,741	57,854	44,012	56,560	44,999	57,049	52,193
		△13,843(△23.9)		△11,561(△20.4)		△4,856(△8.5)	
• 조달사업수입	1,654	1,928	1,909	1,897	2,008	2,019	2,102
		△19(△1.0)		111(5.9)		83(4.1)	
•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5,770	5,850	5,996	6,117	5,991	5,985	6,196
		146(2.5)		△126(△2.1)		211(3.5)	

주: 1. 예산액은 추가경정예산액 기준

2. 각 항목의 두 번째 행은 추경예산 대비 실적액의 초과수납액을 의미하며 괄호 안은 예산 대비 초과수납액의 비율을 나타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회예산정책처 총수입 분석 재구성

□ 재산수입은 2017~2018년 초과수납이 이루어지다가 2019년 부족수납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관유물대여료의 경우 3년 연속 부족수납 되었음

- 관유물 대여료는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주택임대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보증

금 수입의 감소가 나타나 부족수납 되었음

- 정부출자수입의 경우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도로공사 결산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금, 주택도시기금에서 LH 출자금에 대한 지분과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금에 대한 배당수익을 바탕으로 실적이 결정되고 있음
- 전대차관 이자수입의 경우 재산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음
-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은 공무원연금기금 및 국민연금기금의 주식과 대체투자 운용수입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다만 주택도시기금의 부족수납이 지속되고 있음

<표 II -7> 재산수입 결산 현황: 2017~2019

(단위: 억원, %)

	2016 실적	2017		2018		2019	
		예산(A)	실적(B)	예산(A)	실적(B)	예산(A)	실적(B)
재산수입	244,161	270,360	275,996	277,711	280,951	290,609	290,329
		5,636(2.1)		3,240(1.2)		△280(△0.10)	
• 관유물대여료	7,161	7,728	6,534	9,624	9,038	10,224	7,977
		△1,374(△17.8)		△586(△6.1)		△2,247(△22.0)	
• 정부출자수입	12,500	11,687	15,737	14,899	18,013	16,364	14,285
		4,050(34.7)		3,114(20.9)		△2,079(△12.7)	
• 전대차관 이자수입	6	1	3	0.08	0.6	0.23	0.03
		2(200)		0.52(650)		△0.20(△86.9)	
•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224,494	250,945	253,723	253,188	253,900	264,022	268,067
		2,778(1.1)		712(0.3)		4,046(1.5)	

주: 1. 예산액은 추가경정예산액 기준

2. 각 항목의 두 번째 행은 추경예산 대비 실적액의 초과수납액을 의미하며 괄호 안은 예산 대비 초과수납액의 비율을 나타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회예산정책처 총수입 분석 재구성

□ 경상이전수입은 2017~2018년까지 초과수납이 이루어지다가 2019년 부족수납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가산금은 3년 연속 부족수납 되었음

- 경상이전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75%에 미치지 못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이는 경찰청의 과태료, 법무부의 과태료와 징계부과금 등에서의 저조한 수납률을 기록하여, 일반회계 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이 45% 내외로 매우 낮기 때문임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의 경우 특히 법무부의 벌금 및 과료에서 부족수납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 및 과징금에서도 부족수납이 발생하기도 함. 2019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국세청이 37.7%, 공정거래위원회가 25.7%, 방송통신위원회가 8.0%를 기록함

- 가산금의 경우 국세청 가산금에서 징수유예, 정리유예, 정리 중 체납 등의 사유로 미수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족수납이 발생함.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17년 18.0%, 2018년 16.2%, 2019년 15.8%로 나타났으며 미수납액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특별회계의 수입에 따라 변화하는데, 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²⁾에서 부족 수납이 발생하고 있음

<표 II -8> 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2017~2019

(단위: 억원, %)

	2016 실적	2017		2018		2019	
		예산(A)	실적(B)	예산(A)	실적(B)	예산(A)	실적(B)
경상이전수입	335,771	352,538	361,192	363,436	376,696	371,845	361,090
		8,654(2.5)		13,260(3.7)		△10,755(△2.9)	
• 연금수입	112,889	123,699	123,112	132,004	132,057	134,449	135,230
		△587(△0.5)		53(0.04)		780(0.6)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30,038	33,234	38,756	36,393	28,748	31,310	25,266
		5,522(16.6)		△7,645(△21.0)		△6,043(△19.3)	
• 변상금 및 위약금	1,882	1,414	3,701	1,826	4,476	2,549	2,186
		2,287(161.7)		2,650(145.1)		△364(△14.3)	
• 가산금	9,450	9,450	9,800	10,501	8,933	9,080	8,972
		8,846(△9.7)		△1,568(△14.9)		△108(△1.2)	
• 기타경상이 전수입	181,512	184,391	186,777	182,713	202,481	194,457	189,437
		2,386(1.3)		19,768(10.8)		△5,020(△2.6)	

주: 1. 예산액은 추가경정예산액 기준

2. 각 항목의 두 번째 행은 추경예산 대비 실적액의 초과수납액을 의미하며 괄호 안은 예산 대비 초과수납액의 비율을 나타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회예산정책처 총수입 분석 재구성

□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은 2017년에 초과수납이 이루어졌다가 2018~2019년에 부족수납이 이루어졌음. 특히 면허료 및 수수료의 경우 3년 연속 부족수납 되었으며 부족수납액도 큰 편임

2) 업체의 경영상황 악화 및 폐업으로 인한 석유수입부과금 감소, 전기사용부담금 감소 등

-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의 부족수납은 대부분 대법원에서 나타남. 일반회계 중 소송비용의 현금 납부인 면허료 및 수수료와 등기특별회계의 등기부 등초본교부 수수료 등의 면허료 및 수수료가 매해 1,000억원 이상 부족 수납되고 있음
- 잡수입의 경우 2018년에 부족수납 되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우편사업특별회계에서 꾸준히 부족수납이 발생하고 있음
- 병원수입, 교도소수입, 입장료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항공항만 및 용수수입, 실습수입의 경우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음

<표 II -9>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결산 현황: 2017~2019

(단위: 억원, %)

	2016 실적	2017		2018		2019	
		예산(A)	실적(B)	예산(A)	실적(B)	예산(A)	실적(B)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81,321	86,641	87,207	91,455	86,428	98,861	97,610
		566(0.7)		△5,027(△5.6)		△1,251(△1.3)	
• 병원수입	147	177	163	151	148	190	199
		△14(△7.9)		△3(△2.0)		9(4.7)	
• 교도소수입	624	719	665	760	58	748	630
		△54(△7.5)		△102(△13.4)		△118(△15.8)	
• 입장료수입	976	1,208	1,024	991	1,196	1,325	1,317
		△184(△15.2)		205(20.7)		△8(△0.6)	
• 면허료 및 수수료	8,441	9,792	8,403	12,752	9,289	11,928	9,718
		△1,389(△14.2)		△3,463(△37.3)		△2,210(△18.5)	
• 입학금 및 수업료	86	89	80	92	73	89	53
		△9(△10.1)		△19(△20.7)		△35(△39.7)	
• 항공항만 및 용수수입	1,834	2,148	2,046	2,245	2,072	2,374	1,943
		△102(△4.7)		△173(△7.7)		△431(△18.2)	
• 실습수입	38	43	37	43	32	44	35
		△6(14.0)		△11(△25.6)		△9(△19.6)	
• 잡수입	69,176	72,465	74,789	74,421	72,959	82,164	83,714
		2,324(3.2)		△1,462(△2.0)		1,550(1.9)	

주: 1. 예산액은 추가경정예산액 기준

2. 각 항목의 두 번째 행은 추경예산 대비 실적액의 초과수납액을 의미하며 괄호 안은 예산 대비 초과수납액의 비율을 나타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회예산정책처 총수입 분석 재구성

- 관유물매각대는 3년 연속 부족수납 되었으며 부족수납의 오차율이 큰 편에 속함.
 특히 재고자산매각대 및 유동자산의 경우 3년 연속 부족 수납되었으며 오차율도 크게 나타남
- 관유물매각대의 경우 계획 하나의 성립여부에 따른 액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예산 대비 실적의 오차율이 크게 발생함
 - 고정자산매각대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에 부족수납 오차율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사혁신처 공무원 연금기금에서 노후 임대주택 매각 계획을 변경하여 수납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임
 -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는 국립 중앙의료원 토지 매각 지연으로 3년 동안 해당 계획의 금액 전액이 수납되지 않았으나, 2018년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징수액 증가와 2019년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토지환매에 따른 초과수입으로 예산액 대비 초과수납이 이루어짐
 - 재고자산매각대 및 유동자산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가격안정용 수매수입 농산물의 판매대금 및 종자의 판매수입이 적게 수납된 것이 부족수납의 주요 원인임

<표 II -10> 관유물매각대 결산 현황: 2017~2019

(단위: 억원, %)

	2016 실적	2017		2018		2019	
		예산(A)	실적(B)	예산(A)	실적(B)	예산(A)	실적(B)
관유물매각대	33,761	37,997	31,797	27,810	27,031	30,994	27,047
		△6,200(△16.3)		△779(△2.8)		△3,947(△12.7)	
• 고정자산매각대	7,899	8,441	8,267	1,864	782	1,669	1,202
		△174(2.1)		△1,082(△58.0)		△467(△28.0)	
•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18,218	18,696	16,271	16,854	19,836	19,651	19,801
		△2,425(△13.0)		2,982(17.7)		149(0.8)	
•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자산	7,644	10,860	7,258	9,092	6,413	9,674	6,045
		△3,602(△33.2)		△2,679(△29.5)		△3,629(△37.5)	

주: 1. 예산액은 추가경정예산액 기준

2. 각 항목의 두 번째 행은 추경예산 대비 실적액의 초과수납액을 의미하며 괄호 안은 예산 대비 초과수납액의 비율을 나타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회예산정책처 총수입 분석 재구성

□ 용자 및 전대차관원금 회수는 3년 연속 부족 수납되었으며 특히 용자원금 회수가 3년 연속 부족수납 됨

- 용자원금회수의 경우 기타민간용자원금 회수에서는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도시기금에서 만기 미도래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부족수납액이 발생함
- 전대차관원금 회수는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의 전대차관원금회수에서 연체 및 부도 병원 발생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부족 수납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II-11> 용자 및 전대차관원금 회수 결산 현황: 2017~2019

(단위: 억원, %)

	2016 실적	2017		2018		2019	
		예산(A)	실적(B)	예산(A)	실적(B)	예산(A)	실적(B)
용자및전대차 관원금 회수	264,301	276,820	228,188	270,942	224,412	255,632	249,231
		△48,632(△17.6)		△46,351(△17.2)		△6,401(△2.5)	
• 용자원금 회수	264,268	276,797	228,167	270,919	224,383	255,608	249,207
		△48,630(△17.6)		△46,536(△17.2)		△6,401(△2.5)	
• 전대차관원 금 회수	32	23	21	23	29	23.9	23.6
		△2(△8.7)		6(26.1)		△0.3(1.2)	

주: 1. 예산액은 추가경정예산액 기준

2. 각 항목의 두 번째 행은 추경예산 대비 실적액의 초과수납액을 의미하며 괄호 안은 예산 대비 초과수납액의 비율을 나타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회예산정책처 총수입 분석 재구성

□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는 일반회계 항목으로 기획재정부의 기타유가증권매각대로 구성됨

- 2017년과 2019년의 초과수납은 수입금 예비정산에 따른 징수결정액 증가에 기인함
- 2018년 부족수납은 매각 유가증권의 납부기한 미도래에 기인함

<표 II-12>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 결산 현황: 2017~2019

(단위: 억원, %)

	2016 실적	2017		2018		2019	
		예산(A)	실적(B)	예산(A)	실적(B)	예산(A)	실적(B)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	1,239	643	1,117	686	576	278	540
		474(73.7)		△111(△16.1)		262(105.9)	
• 유가증권매각 대	1,239	643	1,117	686	576	278	540
		474(73.7)		△111(△16.1)		262(105.9)	

주: 1. 예산액은 추가경정예산액 기준

2. 각 항목의 두 번째 행은 추경예산 대비 실적액의 초과수납액을 의미하며 괄호 안은 예산 대비 초과수납액의 비율을 나타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회예산정책처 총수입 분석 재구성

3. 국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 및 주요항목별 분석

가) 국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

□ 2019년 국세외수입 성질별 징수율을 살펴보면 경상이전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경상이전수입의 경우 약 40%에 해당하는 항목이 80%미만의 징수율을 보임
- 특히 20% 미만의 징수율에 해당하는 항목은 약 83%가 경상이전수입에 해당함
- 반면 관유물매각대,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의 경우 항목의 90% 이상이 높은 징수율(80% 이상)을 보임
-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재산수입 또한 85%가 넘는 항목들이 높은 징수율(80% 이상)을 보임
-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기여금, 수입대체경비수입,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의 경우 모든 항목이 80% 이상의 높은 징수율을 보임

<표 II-13> 국세외수입 성질별 징수율 분포(2019)

(단위: 개, %)

		총 수입관	0% 이상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경상이전수입	개수	463	90	24	36	38	275
	비율		19.44	5.18	7.78	8.21	59.40
관유물매각대	개수	131	5	2	0	0	124
	비율		3.82	1.53	0.00	0.00	94.66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개수	18	0	0	0	1	17
	비율		0.00	0.00	0.00	5.56	94.44
사회보장 기여금	개수	8	0	0	0	0	8
	비율		0.00	0.00	0.00	0.00	100
수입대체경비 수입	개수	41	0	0	0	0	41
	비율		0.00	0.00	0.00	0.00	100
용자및전대차 관원금회수	개수	44	3	1	0	1	39
	비율		6.82	2.27	0.00	2.27	88.64
재산수입	개수	348	8	2	13	19	306
	비율		2.30	0.57	3.74	5.46	87.9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개수	161	2	2	4	3	150
	비율		1.24	1.24	2.48	1.86	93.17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개수	125	0	0	0	0	125
	비율		0.00	0.00	0.00	0.00	100

주: 징수율: 100-(미수납액/징수결정액)*100

자료: 열린재정 재구성

□ 국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많은 상위 18개 항목을 보더라도 경상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상위 18개 항목 중 16개의 항목의 성질이 경상이전수입에 해당함

○ 세부적으로는 기타경상이전수입(법정부담금을 포함), 가산금,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등이 있음

○ 관유물매각대의 경우 분할납부가 이루어지거나 납부 기한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전되는 경우가 많으며, 표 <II-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징수율이 매우 높음을 감안할

때, 경상이전수입에 대한 분석이 미수납관리에서 핵심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음

<표 II -14> 국세외수입 미수납액 상위 18개 항목

(단위: 억원)

소관명	수입관명	수입항명	징수 결정금액	불납 결손금액	미수납액
금융위원회	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156000	21600	130000
국세청	경상이전수입	가산금	53100	3240	41500
금융위원회	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29700	2130	26200
고용노동부	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22400	541	20600
금융위원회	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21600	509	20200
산업통상자원부	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19500	2690	15200
경찰청	경상이전수입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6000	221	8540
국토교통부	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12200	42.4	7610
환경부	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16300	173	7090
농림축산식품부	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15000	0	5630
기획재정부	관유물매각대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4900	0	4900
관세청	경상이전수입	가산금	4230	51.9	4130
고용노동부	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4880	321	3620
기획재정부	경상이전수입	변상금및위약금	2180	0	2180
고용노동부	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4060	118	2060
농림축산식품부	관유물매각대	재고자산매각대및유동 자산	2440	0	1940
보건복지부	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4450	0	1590
경찰청	경상이전수입	가산금	1580	28.8	1290

자료: 열린재정 재구성

나) 주요항목별 분석3)

(1) 경상이전수입: 가산금

□ 국세청, 경찰청, 고용노동부 가산금 수납률이 저조하게 나타남

- 최근 4년간 가산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실적을 보면 평균적인 수납률이 매우 저조하고, 2016년 이후 수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미수납액 또한 매년 증가 추세임

<표 II -15> 국세청, 경찰청, 고용노동부 최근 4년간 가산금 결산 현황: 2016~2019

(단위: 백만원, %)

부처	연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국세청	2016	796,900	4,256,090	875,259	109.8	20.6	3,095,572	285,259
	2017	906,300	4,606,507	827,248	91.3	18.0	3,470,970	308,289
	2018	982,000	5,105,441	828,625	84.4	16.2	3,924,806	352,010
	2019	833,000	5,312,685	837,478	100.5	15.8	4,151,151	324,056
경찰청	2016	37,437	143,293	39,410	105.3	27.5	101,975	1,907
	2017	38,186	143,789	31,202	81.7	21.7	110,633	1,955
	2018	38,950	154,148	29,373	75.4	19.1	121,205	3,571
	2019	39,729	158,372	26,837	67.6	16.9	128,655	2,880
고용 노동부	2016	145	1,594	286	197.2	17.9	1,307	2
	2017	145	2,309	264	182.1	11.4	2,042	2
	2018	145	2,890	214	147.6	7.4	2,640	36
	2019	264	3,869	194	73.5	5.0	3,626	50

자료: 부처별 결산 사업설명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국회예산정책처 2017-2019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을 참고하여 작성함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한 이유는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건이 많고, 미수납액의 이월이 반복되기 때문임
 - 국세청에서는 지방청 추적팀을 활용하여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체납처분면탈범을 적극 고발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서 체납징세과를 활용할 계획임
 - 경찰청은 체납 차량 적발기능이 탑재된 순찰차를 활용하여 변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가산금 미수납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회수를 위탁하고, 시효를 감안하여 회수가능성을 점검하고자 함

- 가산금은 행정이행확보의 수단임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가산금은 본질적으로 행정 목적의 달성과 관련된 금전상의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법 준수를 강제하는 수단임
 - 과도한 가산금 미수납액은 법집행의 실효성을 낮추고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게 됨

(2) 경상이전수입: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이 저조하여 수납률이 61.7%에 불과함
 - 특히 국세청(37.7%), 공정거래위원회(25.7%), 방송통신위원회(8.0%)의 수납률이 다른 부처에 비해 저조함
 - 미수납액이 많은 부처는 경찰청(8,545억원)으로 총 미수납액(14,168억원)의 약 60%임
 - 수납률이 60% 이상인 부처는 법무부(99.1%), 환경부(74.12%), 관세청(62.5%)으로 총 11개의 부처 중 세 개에 불과함

<표 II -16> 2019년도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현황

(단위: 억원, %)

부처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법무부	12,816	12,698	99.1	118	0
경찰청	17,016	8,250	48.5	8,545	221
국세청	3,763	1,419	37.7	1,199	1,145
국토교통부	1,202	535	44.5	667	0.1
공정거래위원회	1,997	513	25.7	1,392	93
고용노동부	766	432	56.3	332	3
보건복지부	785	426	54.2	337	22
금융위원회	630	362	57.4	266	2
환경부	255	189	74.1	50	16
관세청	289	180	62.5	108	1
방송통신 위원회	1,041	83	8.0	959	0
합계	40,938	25,266	61.7	14,168	1,50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부처 제출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등의 부과 시 대상자의 사는 곳을 철저히 파악하고, 체납자의 재산조사 횟수 및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함
 - 수납률이 저조한 부처에 따르면 체납자 중 상당수가 무재산자나 소재불명자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 미수납자 중 벌금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수회 부과 받은 경우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
 - 더불어 현실적으로 수납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불납결손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미수납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표 II-17>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유별 미수납 금액(2019)

(단위: 억원, %)

부처	미수납액				
	징수유예	납기 미도래	채납자 재력부족 또는 거소 불명	기타	합계
국세청	33	372	792	2	1,199
공정거래위원회	0	907	415	70	1,392
방송통신위원회	23	22	767	147	959

자료: 부처 제출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경찰청 과태료의 경우 연례적으로 부족수납이 일어나고 있음

- 부족수납의 주요원인은 경찰청 과태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과태료 수납률 저조임
- 경찰청은 가산금(2008년), 차량이전 시 과태료 완납 증명(2011년), 변호판 영치(2012년), 고액·장기 체납 과태료를 대상으로 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의 위탁 및 최초 고지서의 반송률 개선을 위한 일반우편으로의 발송방식 변화(2017년),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강제처분 강화(2018년) 등을 통하여 수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실제 2014년 이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불납결손액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러한 징수방법 및 제재수단의 변화가 수납률 제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표 II-18> 경찰청 과태료 5년간 결산 내역: 2014~2019

(단위: 억원, %)

부처	연도	예산액(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 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경찰청	2014	646,459	1,789,096	545,232	84.3	30.5	1,110,118	133,747
	2015	665,853	1,609,734	584,412	87.8	36.3	987,326	38,042
	2016	620,000	1,499,747	554,710	89.5	37.0	909,326	35,711
	2017	623,300	1,583,256	651,223	104.5	41.1	908,288	23,746
	2019	816,200	1,701,600	825,000	101.0	48.5	854,500	22,100

주: 2018년은 공개된 자료의 한계로 누락

자료: 부처 제출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경상이전수입: 변상금

- 변상금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낮으며 미수납액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 미수납 변상금액을 다음연도에 다시 부과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임
- 변상금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 등에게 부과하는 금액임
- “국유재산법”은 변상금 미납 시 연체료 징수, 독촉장 발부와 더불어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의 재력부족이나 거소불명으로 미수납이 나타남

<표 II-19> 변상금 미수납 금액

(단위: 백만원, %)

	2015	2016	2017	2018	2019
징수결정액	237,922	243,261	240,935	288,815	348,570
미수납액	198,692	198,287	201,368	243,467	272,469
징수율	16.49	18.49	16.42	15.70	21.83

주: 징수율: 100-(미수납액/징수결정액)*10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회예산정책처

- 장기 미수납액에 대하여 정부와 위탁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변상금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정부는 2013년에 국유재산 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함
- 강력한 징수절차와 관리의 일원화로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보 제공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

(4) 경상이전수입: 법정부담금

- 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따라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이며, 법정부담금은 경상이전수입의 하나로 총수입의 결산 대상임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전체 부담금은 총 90개이나, 총수입 결산의 관점에서 법정부담금은 금융성기금, 외국환평형기금에 속하는 부담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귀속되는 부담금을 제외함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에서는 법정부담금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써 얻는 수입으로 규정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제8조에 따른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 실적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20. 3. 31.>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보고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운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담금 부과에 근거 법률에 부과요건 등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많음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광물 수입·판매부과금, 방제분담금 등은 근거 법률에 부담금 부과 근거만을 규정하고 부과기준과 납부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최소한 부담금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부과요율의 범위를 근거 법률에 규정하여 부담금 부과에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부담금을 설치하는 경우의 지침을 규정할 수 있는 일반법을 만든다면 효과적으로 부담금부과 및 징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근거를 두지 않은 부담금이지만 법정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 있음
 - 구체적으로, 주파수할당대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환경부), 원자력안전관리비용(원자력 안전위원회)이 그 예임
 -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부담금의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 소관별 결산에 따르면 법정부담금 수입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순으로 많음
 - 다섯 부처 소관 법정부담금이 총수입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의 약 80%임
 -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소관 법정부담금이 약 50%이므로 우선적으로 두 부처에 대하여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2018년 법정부담금의 증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파수할당대가 부담금에서 5G의 도입으로 신규 주파수할당대가수입이 발생한 점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지보전부담금에서 체납액 징수가 일어난 점이 주요 원인임
 - 특히 주파수할당대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바, 편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2019년 법정부담금의 감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석유수입부과금에서 발전용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이 인화된 점이 주요 원인임

<표 II -20> 소관별 법정부담금 결산 현황: 2017~2019년

(단위: 억원, %)

	연도	예산액 (A)	실적		전년대비		예산 대비	
			금액(B)	비중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법정부담금	2017	143,973	141,356	100.0	△1,482	△1.0	△2,617	△1.8
	2018	140,545	155,585	100.0	14,229	10.1	15,040	10.7
	2019	149,638	143,413	100.0	△12,176	△7.8	△6,225	△4.2
고용노동부	2017	7,229	7,539	5.3	193	2.6	310	4.3
	2018	8,402	8,741	5.6	1,202	15.9	339	4.0
	2019	9,343	9,571	6.7	830	9.5	228	2.4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2017	12,613	11,887	8.4	△4,801	△28.8	△726	△5.8
	2018	11,599	20,786	13.4	8,899	74.9	9,187	79.2
	2019	14,848	14,865	10.4	△5,922	△28.5	16	0.1
국토교통부	2017	5,507	6,777	4.8	3,120	85.3	1,270	23.1
	2018	4,958	4,981	3.2	△1,796	△26.5	23	0.5
	2019	6,791	4,964	3.5	△17	△0.3	△1,826	△26.9
농림축산식 품부	2017	8,543	10,922	7.7	△961	△8.1	2,379	27.8
	2018	8,925	12,711	8.2	1,789	16.4	3,786	42.4
	2019	10,970	10,862	7.6	△1,850	△14.6	△109	△1.0
문화체육관 광부	2017	6,787	7,237	5.1	820	12.8	450	6.6
	2018	6,689	7,464	4.8	227	3.1	775	11.6
	2019	7,876	7,602	5.3	138	1.9	△274	△3.5
보건복지부	2017	30,671	29,690	21.0	60	0.2	△981	△3.2
	2018	30,356	30,666	19.6	976	3.3	310	1.0
	2019	29,247	28,105	19.6	△2,561	△8.4	△1,142	△3.9
산림청	2017	1,049	1,645	1.2	150	10.0	596	56.8
	2018	1,080	1,614	1.0	△31	△1.9	534	49.4
	2019	1,500	1,592	1.1	△21	△1.3	92	6.2
산업통상자 원부	2017	52,175	46,211	32.7	△390	△0.8	△5,964	△11.4
	2018	48,973	49,354	31.7	3,143	6.8	381	0.8
	2019	48,075	44,892	31.3	△4,462	△9.0	△3,183	△6.6
외교부	2017	878	1,016	0.7	499	96.5	138	15.7
	2018	986	1,002	0.6	△14	△1.4	16	1.6
	2019	1,067	1,005	0.7	3	0.3	△63	△5.9
원자력안전 위원회	2017	993	990	0.7	138	16.2	△3	△0.3
	2018	1,001	1010	0.6	20	20	9	0.9

	연도	예산액 (A)	실적		전년대비		예산 대비	
			금액(B)	비중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2019	1,038	1,038	0.7	29	2.8	1	0.1
인사혁신처	2017	10	27	0.0	△13	△32.5	17	170.0
	2018	6	14	0.0	△13	△48.1	8	133.3
	2019	-	-	-	-	-	-	-
중소벤처기 업부	2017	27	35	0.0	1	2.9	8	29.6
	2018	40	27	0.0	△8	△22.9	△13	△32.5
	2019	-	-	-	-	-	-	-
해양수산부	2017	418	600	0.4	31	5.4	182	43.5
	2018	484	575	0.4	△25	△4.2	91	18.8
	2019	496	514	0.4	△61	△10.6	18	3.6
환경부	2017	17,073	16,779	11.9	△332	△1.9	△294	△1.7
	2018	17,046	16,639	10.7	△140	△0.8	△407	△2.4
	2019	18,386	18,403	12.8	1,760	10.6	17	0.1

주: 예산액은 추가경정예산액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회예산정책처 총수입 분석 재구성

(5)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 면허료 및 수수료는 3년 연속 부족수납 되었으며(표 II-9 참조), 2019년 결산 결과 예산 대비 2,210억원(18.5%) 부족수납 되었음
 -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중 잡수입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19년 결산에서 소관부처 중 가장 큰 규모의 미수납액이 발생한 곳은 해양수산부임
 - 대법원의 예산액 대비 수납액의 수납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함

- 해양수산부의 최근 면허료 및 수수료의 미수납액이 30~40억원 내외로 나타남
 - 해양수산부의 면허료 및 수수료는 공유수면 사용 및 선박 총톤수 검사 수수료임
 - 해양수산부에서는 미수납액 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납부독촉,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권유, 자산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사법기관 고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 그러나 지속적인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미수납 발생 원인에 따른 새로운 수단들에 대한 도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표 II -21> 해양수산부 면허료 및 수수료 최근 5년간 결산 내역: 2015~2019

(단위: 백만원, %)

부처	연도	예산액(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해양 수산부	2015	14,200	22,983	19,990	140.8	87.0	2,993	-
	2016	10,422	15,081	11,050	106.0	73.3	4,004	27
	2017	13,858	15,151	12,049	86.9	79.5	3,101	0
	2018	14,274	21,291	17,896	125.4	84.1	3,394	-
	2019	14,072	16,058	13,033	88.7	81.2	3,024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부처 제출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해양수산부의 면허료 및 수수료 미수납액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관계기관 예산부족으로 나타남

- 관계기관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수납이 약 23억원,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으로 인한 미수납이 약 7억원임
- 관계기관의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므로 기관별 내역 공유제를 추진하고 더불어 납부기한 도래 사전 예고제 강화, 미수납채권 회수 기관별 정기회의 개최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표 II -22> 2019년도 해양수산부 면허료 및 수수료 미수납액 명세

(단위: 억원, %)

	납기 미도래		체납자 재력부족 또는 거소 불명		관계기관 예산부족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해양수산부	22	136	15	608	199	2,280	242	3,024

자료: 부처 제출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최근 5년간 대법원의 면허료 및 수수료의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평균 75.1%로 예산액이 과다 계상되어 왔음

- 대법원(일반회계)의 면허료 및 수수료는 소장이나 신청서 등 제출 시에 납부하는 인지액 등 소송비용에 대한 수입임
- 이는 소송 등의 건수에 비례하여 늘어나는 수입으로 법원이 자체 노력으로 징수액을 늘리기 어려움
- 최근 5년간 수납액 증감추이가 매년 1% 내외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향후 적절한 예산을 계상하고 미수납률을 줄여야 함

<표 II-23> 대법원 면허료 및 수수료 최근 5년간 결산 내역: 2015~2019

(단위: 백만원, %)

부처	연도	예산액(A)	징수 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C/A)	수납률(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대법원	2015	420,660	291,095	291,095	69.2	100	0	0
	2016	350,000	274,302	274,302	78.4	100	0	0
	2017	338,900	278,193	278,193	82.1	100	0	0
	2018	384,140	279,283	279,283	72.7	100	0	0
	2019	384,140	281,281	281,281	73.2	100	0	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부처 제출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잡수입

□ 잡수입 미수납금은 부처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미수납금은 주로 체납자의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납기 미도래 등으로 발생함
- 특히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의 경우 국고 손실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체납자 독촉, 거소확인 등 행정력이 소요됨
- 향후 잡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 항목에서 발생 후 2년과 같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이관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징수 업무의 효율성과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표 II -24> 잡수입 미수납액 현황: 1억원 이상, 2년 연속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우편사업 특별회계	2,930	1,425	1,505	3,185	1,680	1,493
	우체국예금 특별회계	3,895	169	3,232	3,423	191	3,232
국방부	일반회계	34,571	33,006	1,564	31,593	29,962	1,631
	국인복지기금	260,385	258,383	2,002	265,603	263,849	1,755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8,973	8,308	665	2,985	2,241	744
	교통시설 특별회계	2,507	1,931	1,314	1,167	536	632
해양수산부	교통시설 특별회계	9,265	7,950	582	9,413	8,424	988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24,121	23,537	582	26,704	25,957	747
농림축산 식품부	양곡관리 특별회계	11,906	11,221	685	5,463	4,777	686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1,419	1,001	418	1,455	1,028	472
산림청	일반회계	4,079	3,902	177	3,005	2,870	135
계		364,052	350,834	12,720	353,996	341,515	12,46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부처 제출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국세외수입 관련 법령 분석

- 지방세외수입의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된 후 2020.01.01. 개정됨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에 근거하여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납입, 체납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국세외수입의 경우 총괄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법률이 부재하여 두 관련 법률을 비교 분석 하고자 함
- 국세외수입의 경우 “국가채권 관리법”, “국고금관리법” 등 여러 개별법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두 법률을 중심으로 분석
- 적용 대상, 징수, 체납 절차, 업무의 정보화, 진단 평가 5가지 측면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과 국세외수입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바를 비교함

<표 II -25>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시행 전후 비교

구분	시행 이전	시행 이후
지방세외수입 관련 법률	개별 법률(약 200여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체납처분 절차	지방세법 준용	압류, 독촉 등 체납처분 절차의 명확화
이행강제수단	과태료 등 일부 항목 개별법 규정	1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금지급 정지,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정보 제공 등
업무의 정보화	법적 근거 없음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설치, 운영, 관리
대국민서비스	법적 근거 없음	신용카드 납부 등 전국세외수입 납부편의 제공

가) 적용대상

□ 지방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 지방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법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서는 법의 대상을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며,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효율적 징수 및 관리를 통한 재정 확충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함

- 이는 대상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지방세외수입의 총괄관리를 가능하게 함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세외수입 :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 “국고금 관리법”의 적용대상은 국고금으로 국세외수입보다 광범위함

- 국고금의 정의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 및 세외수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

「국고금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나.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다. 제32조에 따라 조달하는 현금등

라. 제34조에 따라 국고금의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 “국가채권관리법”의 경우 국세외수입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하고 있어 국세외수입 전체를 포괄하지 못함
- 따라서 국세외수입에 해당하는 경상이전수입 중 채납률이 높은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국가채권관리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채권 징수 및 채납절차 등 해당 부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움

「국가채권관리법」
 제3조(적용 제외 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36조와 제37조를 적용한다.

1. 벌금, 과료(料料), 형사추징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2. 증권으로 되어 있는 채권
3.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
4. 보관금(保管金)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5. 기부금에 관한 채권
6. 국세 및 관세와 이의 징수에 관련된 채권

지방세외수입과 국세외수입의 관련 법률 유무 비교

	지방세외수입	국세외수입
세외수입 관련 법률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별 법률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나) 징수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효율적 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
- 이 법의 목적(제1조)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효율적 징수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징수의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징수의 우선순위(제4조) : 다양한 종류의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의 징수의 우선순위를 두어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제4조(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1. 체납처분비
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 가산금

- 과세정보의 요구, 이용(제5조) :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 과세자료를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제2항), 협조 요청을 한 경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제3항)
 - 이 역시 정보 요구 및 협조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필요한 규정에 해당
 - 이러한 규정은 징수자와 납세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줄여 징수절차의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제5조(과세정보 등의 요구·이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이하 "과세정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2020.3.24>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또는 제1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7조 각 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자료(「지방세기본법」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27, 2017.7.26, 2017.12.26, 2020.3.24>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 외의 자료로서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2020.3.24>

- 징수의 효율성을 위한 의무이행확보수단 규정 : 이 법에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 완납할 때까지 대금지급을 정지하는 대금지급정지(제7조), 관허사

업의 제한(제7조의2), 체납자의 명단공개(제7조의3) 규정을 두고 있어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

- 대금지급정지, 관허사업의 제한, 체납자의 명단공개 등은 국세와 유사하게 납부자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여 징수율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규정은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침익적 규정이므로 지방세외수입을 담당하는 하나의 법에 통일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7조(대금지급 정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0만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7조의2(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은 제외한다)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결손처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2017.12.26, 2020.3.24>

□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부처별 관리로 인한 징수 비효율성

- 국가의 수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징수와 수납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 사무를 관리하고 있음
 - 특히 가장 다양한 부처와 법률에 근거하는 경상이전수입은 부처별로 개별법에 따라 징수되고 있으나, 이를 통합하는 체계적 법적 토대가 미흡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징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국고금 관리법」

제6조(수입의 총괄과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8. 2. 29.>

- “국가채권관리법”의 경우 경상이전수입에 해당하는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등은 법의 제외대상임

「국가채권관리법」

제3조(적용 제외 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36조와 제37조를 적용한다.

1. 벌금, 과료(科料), 형사추징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2. 증권으로 되어 있는 채권
3.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
4. 보관금(保管金)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5. 기부금에 관한 채권
6. 국세 및 관세와 이의 징수에 관련된 채권

- 국세외수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처럼 효율적 징수를 위한 정보 요구·이용에 관한 규정, 대금지급 정지 등 납부자의 의무이행을 유도하는 제도는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을 준용함
 - 이는 국세외수입 중 경상이전수입의 미수납률을 개선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의 차이로 법률 상호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⁴⁾

- 국세외수입의 경우 관허사업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준용규정이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르게 되는데, 2019.12.31. 법 개정예 따라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할 경우 관련 관허사업제한이 이루어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를 경우 ‘지방세외수입금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로 제한 받게 되어 관련 관허사업제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유사함
- 그러나 그 체납액은 “국세징수법”에서는 500만 원 이상이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서는 1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납부의무자의 사업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해당 사업 정지기간의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허가 등의 취소는 납부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를 회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음
- 즉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의하면 관련 사업이 국가허가사업보다 크더라도 10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사업허가를 얻을 수 없거나 허가된 사업이 취소될 수 있으나, 국가세외수입을 체납하여 “국세징수법”을 적용받게 된다면 관허사업규모가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하는 사업보다 작더라도 체납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음⁵⁾

[국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2제1항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4) 권세훈(Kwon Sea-Hoon). "국세외수입징수제도의 통합에 관한 소고." 법학논고 0.64 (2019): p84.

5) 위의 논문, p 83.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2(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은 제외한다)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③ 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사업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른 해당 사업 정지기간의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허가등의 취소는 납부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를 회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지방세외수입과 국세외수입의 징수제도

	지방세외수입	국세외수입
효율적 징수를 위한 수단	징수의 우선순위, 과세정보의 요구 및 이용, 이행강제수단(1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금지급 정지, 관허사업의 제한, 명단공표) 규정	국세징수법(관허사업의 제한), 국세기본법(명단공표) 준용

다) 체납절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규정
- 독촉 :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함.
 - 납부기한은 발급 일부터 20일로 규정

제8조(독촉)

- ①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 압류 : 압류의 요건 및 해제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등 타법을 인용하지 않고 직접 규정하고 있음
 - 독촉 이후에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고 있어 강제성 부여를 통해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임

제9조(압류의 요건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개정 2020.3.24>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14조(압류해제의 요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 1. 납부, 공매(공매)의 중지, 부과금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 4.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
 - 3. 부과금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 체납처분의 중지 및 유예의 요건도 지방세외수입의 성격에 맞게 따로 규정하고 있음
 -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중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할 의무와, 체납자는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음(제16조)

제16조(체납처분의 중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 ②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체납처분 유예)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의 종류와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를 준용한다.

- “국가채권관리법” : 국세외수입 체납절차에 대한 통일된 규정 부재
 - 독촉 : 독촉장은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여 지방세외수입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며, 납입기한 역시 지방세외수입보다 짧은 15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이는 국세외수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며, “국가채권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한계가 있음

제14조(독촉)

-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3조에 따라 고지된 납입기한(납입고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채권은 이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에게 이행

의 독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은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고 독촉에 의한 납입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 강제 이행의 청구 : 국세의 경우 “국세징수법” 에 따라 압류, 매각하여 국세를 충당하도록 하는 체납처분 절차가 정해져있으나 국세외수입 체납의 경우 통일된 규정이 없는 상황임
 - 국세와 같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해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강력하게 추징할 권한이 소관부처에 없음
 - 독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이행의 청구는 가능하나 원천징수에 비해 간접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징수의 효율성이 떨어짐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4조에 따른 독촉을 한 후 그 독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한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 제27조에 따라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제30조에 따른 화해로 이행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세징수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 및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담보가 있는 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경매나 그 밖의 담보권 실행 절차를 요청하는 일 또는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일
2. 집행권원(執行權原)이 있는 채권(제3호에 따라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강제집행 절차를 요청하는 일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같은 호의 조치를 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청구를 요청하는 일 및 공정증서(公正證書) 작성 등 집행권원 취득 절차를 요청하는 일

- 체납률이 높은 벌금, 몰수, 과태료는 국가채권관리법의 제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
 -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미납된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의 통일적 관리가 어려움

「국가채권관리법」
 제3조(적용 제외 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36조와 제37조를 적용한다.
 1. 벌금, 과료(科料), 형사추징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2. 증권으로 되어 있는 채권
 3.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
 4. 보관금(保管金)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5. 기부금에 관한 채권
 6. 국세 및 관세와 이의 징수에 관련된 채권

- 국세외의 중앙정부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국세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준용규정은 편리한 입법기술이지만, 남용되는 불명확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 통일성을 상실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음⁶⁾
 - 자의적인 행정청의 결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 법률적 분쟁을 남기기 때문에 국세외수입 강제징수에 대한 통일적 해결이 필요함

지방세외수입과 국세외수입의 체납절차

	지방세외수입	국세외수입
체납 절차	압류, 독촉 등 체납처분 절차의 명확화	통일된 규정 없이 개별법에 따른 국세징수법 준용 국가채권관리법의 독촉, 강제이행 청구 규정

6) 앞의 논문, p. 78.

라) 업무의 정보화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 통합된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제20조) :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외수입을 포괄하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세외수입의 총괄 관리 및 업무 처리의 전산화를 가능하게 함

제20조(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나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또는 지방세외수입의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중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구축(제20조의2) :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

제20조의2(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통합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한다.

- 납부자의 편의성 제고(제21조) : 대국민서비스 측면에서 신용카드납부 등 전국 세외수입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제21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 ① 납부의무자는 지방세외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② 납부의무자는 지방세외수입을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지방세외수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고금관리법” : 통합된 국세외수입 전산망의 부재

- 업무처리의 정보화를 위해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세외수입과 같이 “통합전산망”을 구축하는 규정이 없어 국세외수입 총괄 관리 및 업무처리의 전산화가 어려움
- 국세외수입 정보화 관련 별도의 조직은 존재하지 않음. 다만 재정혁신국 재정정보과에서 재정업무의 정보화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열린재정(대국민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월별 수입징수상황(국세수입 및 세외수입)을 공개 중

제46조(업무처리의 정보화)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국고금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 법에 따라 국고금 관리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세외수입과 국세외수입의 업무의 정보화

	지방세외수입	국세외수입
업무의 정보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설치, 운영, 관리	법적 근거 없음
	신용카드 납부 등 대국민서비스 제공	국고금 관리법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개발 규정

마) 진단·평가 체계 :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석·진단

- “지방세외수입징수법” : 법 제22조의2에 따라 매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을 실시하고 있음
- 분석, 진단 및 공개(제1항, 제2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년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고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2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분석·진단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7.2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제4항) : 분석 및 진단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음

제2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분석·진단 등)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징수자의 동기부여수단(제5항) : 분석 및 진단을 시시한 결과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자체 또는 공무원은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징수자의 동기부여를 위한 포상체제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국세외수입 관리실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국세외수입 징수자의 동기부족임
 - 국세외수입은 징수가 낮은 부처에 대한 제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국세외수입을 증진한 부처에 대한 보상도 제한적인 상황임
 - 국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해결방안이 징수자인 중앙부처의 동기 증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에서 인정하는 포상체제는 징수를 위한 적절한 유인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님

제2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분석·진단 등)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징수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국가채권관리법” : 국세외수입 진단·평가, 환류시스템의 부족

- 국세외수입이 포함된 국가채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에 의한 “국가채권관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평가대상이 광범위하여 국세외수입만 초점을 두기 어려움
- 법정평가가 아님으로 인해 평가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낮다는 점에서 국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와 국세외수입 증대에는 한계가 있음
 - 국가채권관리 성과평가의 법적 성격 : 국가채권관리법 제5조①4는 “채권관리 사무에 대한 성과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현행 평가를 법적 평가로 보기 어려움

제5조(채권관리사무의 총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채권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4.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성과관리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의 사례를 볼 때 국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국세외수입 관리 및 운용평가”를 도입하여 개별 부처의 국세외수입 운용실태를 평가, 분석하고 이를 환류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외수입과 국세외수입의 진단, 평가체제

	지방세외수입	국세외수입
진단, 평가	매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실시 및 공개 외부전문가와와의 협력을 통한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 분석 및 진단 실시를 통한 환류 (징수 공적이 있는 지자체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법적 근거 없음

바) 지방세외 수입 관련 법체계의 한계점⁷⁾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
 - 이 법의 적용대상은 전체 지방세외수입이 아니며, 그 중 일부에 해당하는 ‘지방세외수입금⁸⁾’에 불과하여 이 법의 성격을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움
 -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세외수입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지방세외수입 중에서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항목만을 포괄함. 혼동의 가능성이 높아 현재는 행정제재부과금으로 바꾸는 중임.
 - 구체적으로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지방세외수입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이후의 절차에 국한하여 적용되고 있어 성격상 절차법, 징수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 따라서 이 법을 통해 지방세외수입과 관련한 전체 법체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방세외수입 관련 일반법의 부재
 - 지방세외수입 관련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 지방세외수입 근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근거가 되는 개별법령은 매우 많으며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부과 근거가 새로 창설, 변경, 폐지되어 매우 가변적임
 - 예를 들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과 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개별법에 따르고 있음
 - 재산임대수입 : 국유재산임대료(국유재산법), 공유재산임대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사용료수입 : 도로사용료(도로법), 하천사용료(하천법), 하수도사용료(하수도법) 상수도 사용료(수도법), 시장사용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도축장사용료(대구광역시 도축장 설치 및 사용조례), 입장료수입(지방자치법, 관광진흥법, 자연공원법,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 부담금 : 일반부담금(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

7) 한국지방세연구원(이상훈),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참고하여 작성

8)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지방세외수입으로 용어

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먹는물 관리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수산자원관리법, 지방자치법, 지하수법, 하수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사) 시사점: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의 장점 차용 및 한계점 보완

- 지방세외수입과 관련된 법령 및 그에 따른 제도들의 장점을 활용하여 국세외수입의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비록 법의 적용대상이 지방세외수입금의 모든 항목을 포괄하지는 못하지만, 징수, 체납 절차, 업무의 정보화, 진단 평가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통해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의 주요 관리대상인 행정제재부과금을 통일적으로 규제함
 - 세외수입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어 다른 법을 준용하는 것보다 효과적임

- 다만 지방세외수입을 다루는 법률들의 한계인 포괄성을 보완하고, 국세외수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반영하여야 함
 -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도 근거가 되는 개별법령이 매우 많으며, 그 성질이 달라서 일반법의 제정이 어려운 바, 국세외수입도 포괄적인 법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국세외수입의 경우 징수기관이 다양하고 지방세외수입과는 달리 자체재원에서의 비중이 높지 않아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보완이 좀 더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함

<표 II-26> 지방세외수입과 국세외수입의 비교

대상	지방세외수입	국세외수입		
법률 기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적용 대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방세외수입 중 행정제재적 성격을 가진 항목)	국세외수입을 포함하는 국고금 전체	국세외수입에 해당하는 경상이전수입 중 체납률이 높은	해당법을 준용하는 경우 징수절차 및 체납절차 준용

대상	지방세외수입	국세외수입		
법률 기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제외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효율적 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통일적으로 규정 - 징수의 우선순위(제4조) - 과세정보의 요구, 이용(제5조) - 대금지급정지(제7조) - 관허사업의 제한(제7조의2), 체납자의 명단공개(제7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이전수입은 다양한 부처와 법률에 근거하게 되며 부처별로 개별법에 따라 징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외수입 중 관련 법률이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 적용 : 관허사업의 제한(국세징수법 제7조), 체납자의 명단공개(국세기본법 제85조의5)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과의 형평성 문제
체납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촉 - 압류 - 체납처분의 중지 및 유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촉 - 강제이행의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외수입 중 관련 법률이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는 경우 적용
업무의 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된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제20조),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구축(제20조의 2), 납부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 납부(제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처리의 정보화를 위해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46조) - 지방세외수입과 같이 “통합전산망”을 구축하는 규정은 없음 	×	×
진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분석·진단 실시(제22조의 2) - 분석, 진단 및 공개(제1항, 제2항) - 외부 전문기관의 참여(제4항) - 징수자의 동기부여 수단(제5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성과관리(제5조) - 국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분석, 진단은 실시하고 있지 않음 	×

5. 국세외수입 관련 조직 분석

가) 국세외수입 관리 조직 및 인력

- 징수기관 : 총괄채권관리관(국가채권), 출납공무원과 수입징수관(국고금)
 - 국세외수입에 대한 개별법에 따라 징수기관을 다르게 두고 있으므로 “국가채권관리법” 과 “국고금관리법” 을 확인해야 함
 - “국가채권관리법” 의 경우 채권관리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사무로 정하고 있어 기획재정부가 채권관리사무의 관리와 책임을 총괄하는 지위를 지님
 - 중앙관서의 장은 관서 소관의 채권에 대한 관리와 채권관리사무 감독의 책임이 있음
 - 그러나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채권관리 사무를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채권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채권관리사무의 총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채권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채권관리에 관한 제도 정비
2. 채권관리사무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 설정
3. 채권관리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정
4.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성과관리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을 관리하고 채권관리관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6조(채권관리사무의 위임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관리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대리할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국가채권관리법”의 경우 총괄채권관리관을 두어 채권관리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중앙관서 내에 채권관리관을 두며, 중앙관서의 장이 채권관리관 중 채권관리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채권관리관’을 임명함

「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총괄채권관리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의 채권관리관 중에서 채권관리사무를 총괄하는 채권관리관(이하 "총괄채권관리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총괄채권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서의 소관에 속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의 작성
 2. 채권관리 절차의 정비
 3. 채권관리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정
 4.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성과관리(납입기한이 지난 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 방안의 수립을 포함한다)
 5.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감독

- “국고금관리법”의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고금 수입의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무총괄 임무를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국고금관리법” 제42조는 국고금 관리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국고금관리법」
 제6조(수입의 총괄과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4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금 관리사무의 취급) 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은 국고금관리를 위해 ‘출납공무원’과 ‘수입징수관’을 임명하여 효율적인 국고금관리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① 출납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수입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징수체계의 이원화 :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

- “국가채권관리법”의 경우 채권관리관은 현금출납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국고금관리법”의 경우 수입징수관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음

「국가채권관리법」

제10조(채권관리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채권관리관은 현금출납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고금관리법」

제1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수입징수관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겸할 수 있다.

□ 개별 부처 중심 관리가 이루어짐

○ 현행 국세외수입은 항목 신설, 효율 인상, 부과·징수 절차, 체납·결손 처분 및 납부방법 등을 국가채권관리법과 국고금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는 대부분 개별부처 중심으로 이루어져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국세외수입 항목 중 과태료(40%), 가산금(21.6%), 변상금(21.1%), 과징금(73.3%)와 같은 경상이전수입의 징수율은 전체 국세외수입 평균 징수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국가채권관리법, 국고금관리법 등을 통해 재정당국이 경상이전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이러한 부처 중심의 관리 방식으로 인해 기획재정부 차원의 재정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음

□ 국세외수입의 총괄관리를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업무가 과별로 분리되어 있어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는 없는 상황임

- 「기획재정부 직제」 및 「기획재정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재정수입의 추계·분석에 있어서 조세수입, 차관수입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은 예산실 예산정책과에서, 국세와 각종 부담금 및 세외수입간의 조정업무 총괄은 세제실 조세분석과에서, 국가채권 관리의 총괄은 국고국 국고과에서, 정부세외수입 수납관리 및 점검은 국고국 출자관리과에서 수행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국고국이 국고금과 국가채권 사무를 총괄하고 있으나 그 사무범위를 감안할 때 국세외수입의 관리에 초점이 두어져 있지는 않음

- 국고국의 출자관리과는 주요 국세외수입항목을 월별 수입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국세외수입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못함

- 이로 인해 재정 확보의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 국세외수입의 종합적·포괄적 관리체계에 제약이 있어 국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움

-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세외수입 전반을 점검하여 국세외수입의 관리와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기획재정부 내에 도입할 필요성

- 재정지출의 경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률을 매월 점검하고, 실적제고를 독려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조사업의 효율성과 제도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 더불어 국세외수입의 관리에 관하여는 각 중앙관서에서 제출하는 보고서를 수합하고 실적이 부진한 경우 징수 활동을 강화할 것을 독려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국가채권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말의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를 통해 채권 현황을 파악하고 있음

- 미수납 정도 파악에 있어서는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 양식에 따라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표시한 회계·기금별 이행기한이 도래한 채권현재액 현황을 활용하고 있음
- 세외수입 실적을 점검할 때에는 부처별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수납액(진도율)을 기준으로 점검하고 있음
- 세외수입 관련하여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부처별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점검·독려하고 있으나,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위원회나 회의는 아직 없으며 올해부터는 주요 부처 채권관리관을 포함한 채권관리협의회(가칭)를 열어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나) 지방세외수입 관리 조직 및 인력⁹⁾

- 지방세외수입은 징수율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정비와 법률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구체적인 지방세외수입의 조직 및 인력을 국세외수입과 비교·분석하여 개선점을 찾고자 함
- 징수기관 : 징수관과 세외수입 분임징수관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수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역할이나, 실제 당해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접 할 수 없어 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 조직이 마련되어 있음

「지방회계법」

제21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9) 이상훈, 위의 논문. p.14.

「지방회계법」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통상 당해 자치단체의 재무회계 규칙을 통해 징수관의 보직이 지정되고, 다시 징수관은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별로 분임징수관을 두게 됨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경우 행정국장이 징수관이 되며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과장과 각 특별회계를 주관하는 국장이 분임징수관의 지위를 갖게 됨(「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규칙」)
- 특정 자치단체의 재무회계 규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직을 지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의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와 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임
- 위에서 예로 든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규칙을 살펴보면, 서울시 종로구 지방세외수입 분임징수관은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과장’ 임
 - 지방세의 분임징수관이 각각 세무1과장,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무과장, 재무과장 등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방세외수입의 분임징수관은 세외수입을 주관하거나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이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음
-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 및 회계 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방세외수입 관리의 책임은 지방세와는 달리 자치단체 내 특정 부서나 특정 담당자가 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개별 지방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각 실·과장이 당해 행정기구 업무 일환으로 처리하고 책임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실제로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 내 거의 대부분의 실·과에서 부과되고 징수됨

□ 회계관계공무원 : 세외수입 담당 총괄직과 분임직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크게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으로 구분함(제2조 제2항)

- 총괄직은 당해 자치단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함
 - 주임직은 소관 회계 부분에서 자기 명의로 독자적인 회계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함
 - 분임직은 주임직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함
- 지방자치단체 내 지방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크게 1) (총괄) 징수관의 업무를 보좌하여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기록·관리하는 자와 2) 개별 세외수입의 징수원인 및 금액을 조사·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 행위를 하는 분임징수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를 이른바 부과부서와 총괄부서(징수부서)가 분리되어있다고 표현함
- 자치단체의 인구 수 및 공무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 (총괄) 징수관의 업무를 보좌하여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공무원 수는 매우 제한되어 있고, 개별 세외수입의 징수 업무 수행자(분임 징수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자)는 거의 모든 부서에 포진되어 있음
- 또한 지방세외수입 분임징수관은 통상적으로 개별 실·과 업무를 겸하고 있으며 분임 징수관의 전체 업무 중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의 비중은 크지 않아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그 관리의 중요성이 간과되기 쉬운 구조임
- 이러한 이유로 총괄 부서에 속한 적은 수의 세외수입 담당자가 전 실·과에 포진된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를 관리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 징수체계의 이원화 : 부과부서와 총괄부서의 분립

-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방세외수입 징수 조직체계는 1) 부과부서 - (총괄) 징수관의 업무를 보좌하여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기록·관리하는 자와 2) 총괄부서 - 개별 세외수입의 징수원인 및 금액을 조사·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 행위를 하는 분임징수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분됨
- 실제로 지방세외수입의 징수(납입고지)단계는 개별 실·과(분임 징수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괄부서에서는 납입고지가 이루어진 지방세외수입의 사후적 관리를 하게 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됨

- 총괄부서에서는 그 납입고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거나, 사전적으로 분임 징수관 소속 실무자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줌
- 총괄부서의 사후적 관리는 주로 납부기한 내 지방세외수입의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개별 실·과(분임징수관)에 독촉장 발부 및 체납처분의 진행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됨
- 또한 분임징수관 소속 담당자는 행정직 공무원이나 총괄부서 담당자는 대부분 세무직 공무원인 경우가 많음
- 분임징수관 소속 행정직 공무원은 납입고지 및 체납처분에 대한 숙련도가 떨어지며, 총괄부서 담당자는 개별 지방세외수입 부과와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 2014년 ‘14.8.7.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역할로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입정보과를 신설함(‘14.4.1)
- 자치단체에도 체납 징수 등에 전문성이 있는 세무부서의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여 개별부서별로 산재한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효율성 제고함
- 2015년에는 세외수입 전담조직 설치 독려를 위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결과 전담조직 설치 자치단체 수가 당초 54개 자치단체에서 2015년 12월 31일 기준 139개로 크게 증가함

<표 II -27> 국세외수입 · 지방세외수입 징수조직의 비교

	지방세외수입	국세외수입
관리와 책임의 총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회계법 제21조)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채권관리법 제5조, 국고금관리법 제6조)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 (지방회계법 제46조)	-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취급할 수 있음 (국고금관리법 제42조)
공무원 조직	징수관, 분임징수관(지방회계법 제46조)	총괄채권관리관(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 출납공무원(국고금관리법 제4조의 3), 수입징수관(국고금관리법 제9조)
관리방식	지방자치단체 단위 운영, 행정자치부의 총괄관리	개별부처중심의 관리
총괄관리전담 부서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실 지방세입정보과	없음
효율성관리	자치단체 내 세외수입 전담조직	재정관리점검회의(재정지출) 보고금관리위원회(국고보조사업)

III. 지방세외수입 관련 제도 및 해외사례 분석

□ 국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전에 세외수입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던 지방세외수입과 해외사례를 분석하고자 함

1. 지방세외수입 관련 제도 분석

□ 지방세외수입은 다양한 제도개선 및 법률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징수율 제고를 도모하고 있는 바, <표 II-26>의 법률 비교와 더불어 구체적인 지방세외수입의 관리체계 및 제도를 분석하고자 함

- 관련 법률의 경우 2013년에는 (구)지방세외수입법을 바탕으로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고, 2019년 이를 “지방행정체제부과금법”으로 정비함
- 국세외수입에 분석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의 구조 및 규모를 통한 특징을 검토하고 국세외수입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함
- 더불어 지방세외수입의 평가보고서, 정보공개, 정보시스템을 분석하고자 함

가) 지방세외수입의 구조 및 규모

<표 III-1> 지방세외수입 구조

일반회계 ·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적 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사업 수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지난년도수입		사업외 수입

□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음

- 징수액은 2019년 기준 29.4조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은 119.8조원임
- 국세와 비교하여 자치재원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
- 2014년에 세입예산과목 구분이 변경되어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용자금 원금, 전입금, 예수금 및 예탁금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의 별도과목으로 신설됨
- 세외수입 항목의 변화로 2014년부터 지방세외수입의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함

<그림 III-1> 세외수입과 지방세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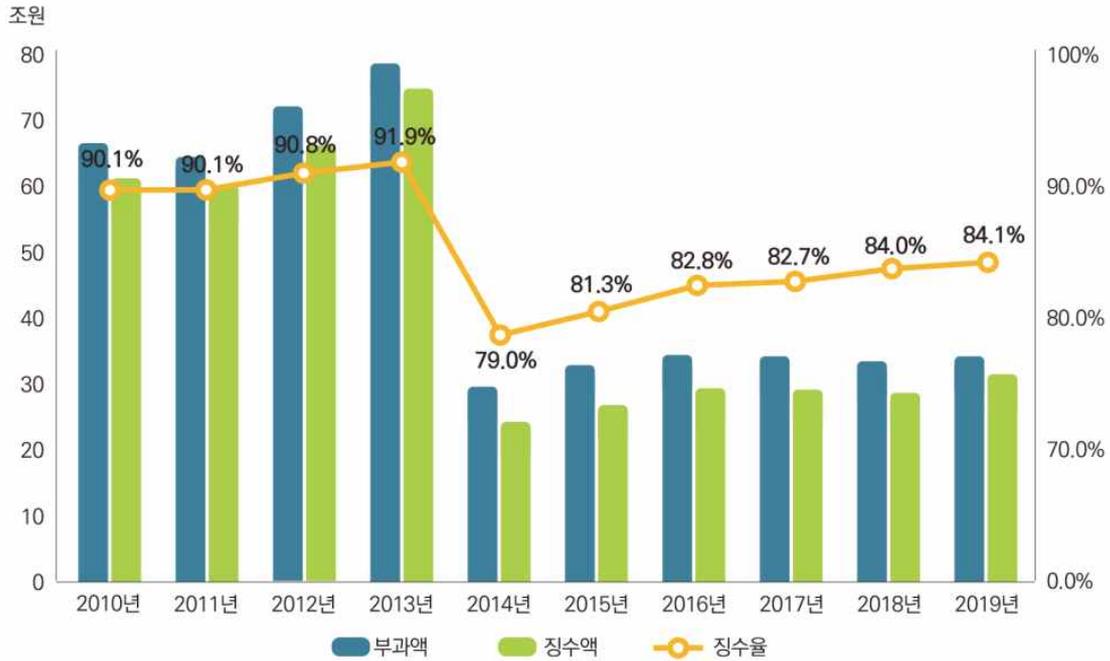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 2020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14. 8. 7.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9년 84.1%에 달함

- 그러나 여전히 지방세 징수율 95.4%에 비해 낮은 실정임
- 징수액은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부과액의 감소로 인한 결과임

<그림 III-2> 지방세외수입 연도별 신장추세



출처: 행정안전부, 2020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 다양한 제도개선 및 법률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징수율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외수입의 관리체계 및 제도를 상세히 분석하고자 함

- 국세와 비교하여 자치재원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
-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므로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세외수입 관련제도의 변천은 다음과 같음

- 2013년: 지방세외수입 징수관리를 위한 일반법으로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2014년: 세외수입의 납부편의를 위해 2014년 간단 e납부 서비스를 확대시행하여 요금을 고지서 없이 은행 ATM,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여 납부가능하게 됨
- 201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도입함.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세입 확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 2016년: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간접강제수단인 체납행위와 관련된 사업 허가

거부,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함

- 2017년: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획득한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및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관허사업제한이 시행됨
-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지방세외수입 업무의 통일성과 정확성 향상을 위한 업무 해설집을 발간함(부록으로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용방법을 수록)
- 2019년: 31개 과목의 고지서 전자송달 시범서비스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우편송달의 한계를 보완하여 납부자 편의 증대를 모색하려는 시도임

나) 지방세외수입 정보공개: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및 통계정보

-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은 지방세외수입과 관련된 정책 및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세외수입금의 징수현황을 구체적으로 집계·분류하여 발간하는 자료임
 - 구체적으로 통계연감은 세외수입 개요, 세외수입 징수현황(총괄), 자치단체별 징수현황, 주요 부과형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하여 다룸
 - 세외수입 중점관리항목을 지정한 행정안전부의 기조에 부합하도록 부과형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별도로 제시함
- 지방세외수입 통계정보는 통계연감 외에도 국가 통계포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지방재정365에 공개되고 있음

다) 지방세외수입 평가보고서 및 인센티브: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을 실시함

- 해당 법은 2015년에 신설되었으며 2015년 시범사업 이후 올해로 사업 6년차임
- 행정안전부 장관은 분석 및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른 포상을 부여할 수 있음
-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이 분석 대상임
- 본 분석의 목적은 제도의 정확한 운용, 합리적이고 투명한 징수, 새로운 수입원의 발굴 노력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지방세외 수입과 관련된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각 지역의 지방세외수입 운용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것임
- 본 분석을 통해 법·제도와 실무 사이의 괴리를 파악할 수 있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영역도 알 수 있음

□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이 이루어지는 절차는 다음 표와 같음

<표 III-2>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절차 (2019년)

단계	내용
방향 설정	-지방세외수입의 전체항목에 대한 평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중점관리대상세목과 정책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평가요소 및 평가지표를 선정
지표 설정	-총량지표와 정책지표(가산점)
자료 수집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에서 기초자료 수집 -행정안전부의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상 자료로 보완(한국지역정보개발원) -당해 자치단체에 요청
서면분석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집된 기초자료 DB화 -지표별 결과 산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표별 분석	-지표별 현황 파악 -전체지방자치단체를 5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결과 비교
현지실사 및 심층 인터뷰	-평가그룹별·지표별 상하위 자치단체 방문 및 원인 분석 -실무 담당자를 상대로 심층인터뷰 -지표설정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
2차 분석	-지표값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지자체별·그룹별 비교 가능)
제도 개선안	-분석지표 개선 및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분야별 지표분석 결과 활용하여 향후 사업의 운영방안 수립
분석결과 공개	

출처: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재구성

□ 분석지표는 2015년 시범사업이후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2019년 분석의 경우 총량지표와 정책지표로 나누어짐

- 총량지표는 정량평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노력, 징수 노력 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준화 평가 방식을 사용하여 등급을 나눔
- 정책지표는 총량지표에 관측되지 않는 정책적 노력을 반영하기 위한 지표로 총량지표 산출결과에 가산점으로 작용함

<표 III-3> 분석지표 체계(2019년)

	분석지표(배점)	
총량 지표	징수율 증감(35점)	징수율증감 = 분석대상세목2018년징수율 - 분석대상세목2017년징수율
	체납액 축소 노력도	체납액증감율 = $\frac{2017년분석대상세목체납액 - 2018년분석대상세목체납액}{2017년분석대상세목체납액}$
	징수액 증감률	징수액증감율 = $\frac{2018년분석대상세목징수액 - 2017년분석대상세목징수액}{2017년분석대상세목징수액}$
	과오납 축소 노력도(건수, 10점)	과오납축소노력도(건) = $\frac{2017년과오납환급건수 - 2018년과오납환급건수}{2017년과오납환급건수}$
	과오납 축소 노력도(금액, 10점)	과오납축소노력도(금액) = $\frac{2017년과오납환급금액 - 2018년과오납환급금액}{2017년과오납환급금액}$
정책 지표	세외수입 징수전담팀 설치 여부(2점) 징수보고회 실시 여부(2점) 업무간담회 실시 여부(2점) 우수사례(징수분야) 제출 여부(2점) 체납징수시행 우수(정량평가, 3점)	

출처: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재구성

□ 2019년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임시적 세외수입 중 제재적·부과금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담금, 변상금)을 중점관리대상 세목으로 설정하고 이를 분석함

- 이는 지방세외수입이 매우 다양한 성격의 수입원이 포함하고 있으며 개별법이 각 지역의 조례를 포함하여 수백 개를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 가능성과 지방세외수입에서의

비중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됨

- 국세외수입에 관한 분석·진단의 경우에도 중점관리 세목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임

- 2019년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에서는 제도개선방안을 크게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의 개선방안, 지방세외수입 관리체계 개선방안, 중점관리대상 세목별 제도 개선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음

<표 III-4> 2019년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

항목	세부항목	내용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의 개선방안	운영실적 분석의 원칙	명확한 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원칙을 사전에 공개
	개별 지방세외 수입별 특징을 고려한 평가방식의 수립	-경상적 세외수입 ①세입 규모의 예측이 가능하므로 부과 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중요한 평가지표가 됨(정량) ②징수가 용이하고 납부 저항이 적으므로 새로운 세입원 발굴 및 적정성 제고 장려(정성) ex. 사용료 및 수수료의 경우 적정 수수료율 설정 노력에 대한 평가 -임시적 세외수입 ①일반부담금은 납부저항이 적지만 분납 등의 징수유예 및 납부의무자 승계가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한 지표 개발 ②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은 제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부과 결정의 성실성과 부과 결정액 대비 징수비율을 평가 ③도로교통법 상 과태료 같이 경상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
	장기평가와 단기평가의 이원화	-평가방식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적어도 3회계연도 이상 같은 방식으로 평가: 평가의 용이성 및 담당자의 유인제고 -외부환경에 민감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정책적 결정을 통해 매년 항목을 선정하여 분석: 입법 흠결 검토,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개선안 도출, 질적 분석 필요

항목	세부항목	내용
지방세외수입 관리체계 개선방안	부과·징수의 이원적 체계의 합리적 운용 및 전산화	-부과·징수의 일원화는 불가능 하므로 부과부서(분임부서)와 총괄부서 사이의 견고한 연결장치를 마련 -제도적 장치: 체납현황의 규칙적인 공시, 지자체별 표준 업무 매뉴얼 제작, 체납업무 이관 절차의 마련 필요 -지방세 징수율과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분리하여 공시
	차세대지방세 외수입정보시스템 도입	-섬세하게 이관절차 등을 설계하여 시스템에 사전에 반영되도록 해야함
	세외수입 징수절차 명확화	-지방세외수입별로 체납처분에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 실무자의 혼란을 야기 -가산금·증가산금, 연체료, 납부의무자의 승계 등 개별법 규정이 부정확하거나 입법의 흠결이 있음 -가급적 부과금, 제재금적 성격을 가지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하여 일반법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중점관리대상 세목별 제도 개선방안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강제수단의 미비
	과태료	-준용법률의 변경 필요
	변상금	-변상금에도 지방행정제재법의 확대 적용 필요
	부담금	-체납처분에 관하여 지방행정제재법 준용 필요

출처: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재구성

라)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 행정안전부의 2020년 10월 8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2022년 2월 3일에 개통하려고 하고 있음
 - 이는 오래된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편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던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려는 노력임
 - 운영실적 분석·진단 사업을 통해 확인되는 문제의 해결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됨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분산 구축된 현재의 시스템을 통합하여 세입관리를 효율화하고 납부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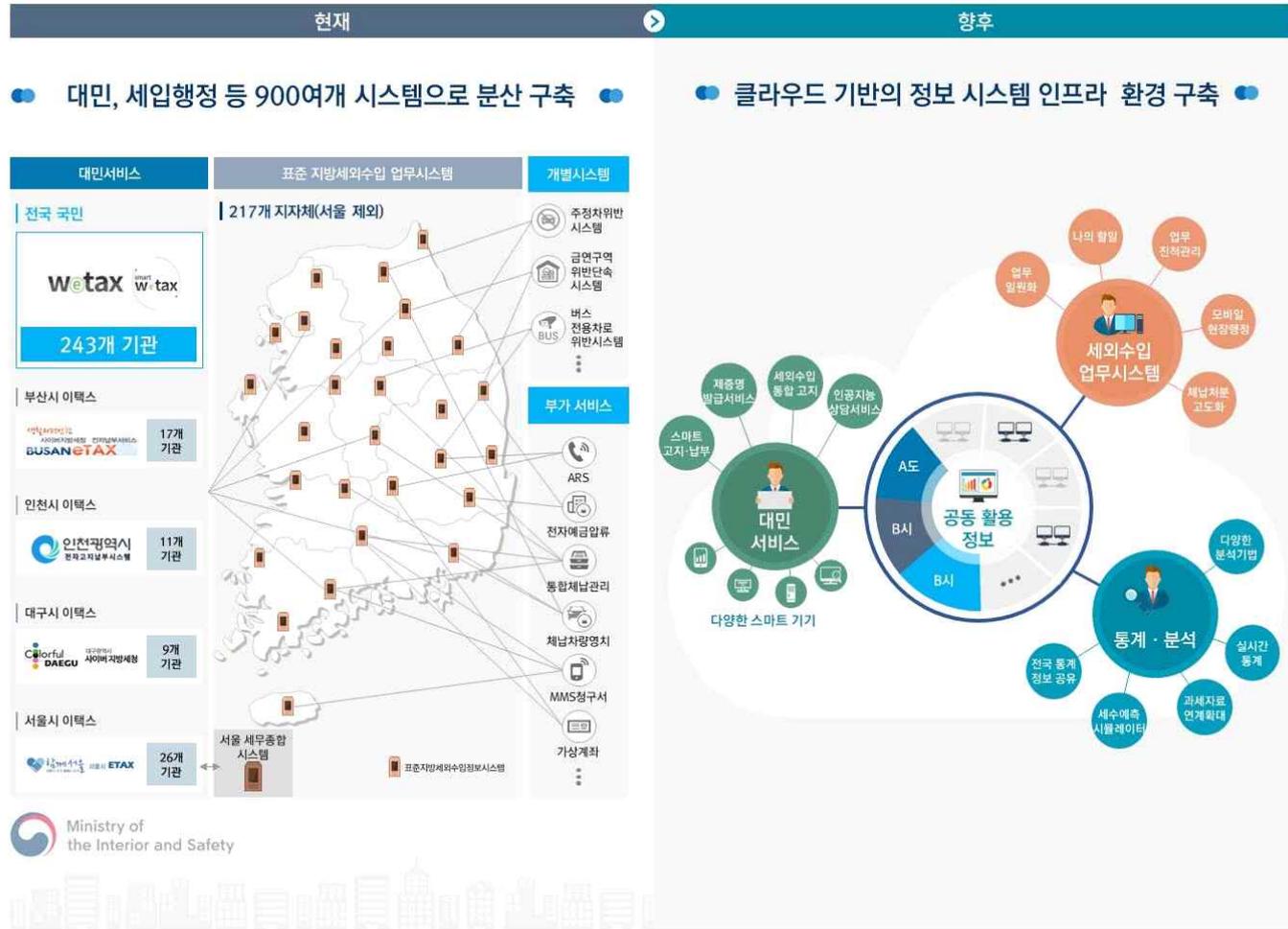
- 지방세외수입은 2150여종이며, 세입과목의 종류와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표준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서울행정시스템, 자치단체 개별시스템 등 여러 개의 시스템¹⁰⁾으로 각기 분산 운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이는 통계 분석의 어려움, 체납처분관리의 분산, 납부자 중심 서비스 및 빅데이터 신기술 적용 어려움 등을 유발함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의 효과는 다음과 같음

- 국민들은 전자 고지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외수입 상담을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실시간 징수실적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업무처리가 자동화되며, 단속업무를 현장에서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어 민원 대응력이 높아짐
- 체납자료의 공동활용을 통해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시스템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0) ①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02.구축) : 도로점용료, 재산임대료 등 2,100여종
 ② 서울행정시스템('99.구축) :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4종
 ③ 자치단체 개별 세외수입시스템 : 상·하수도사용료, 금연구역위반과태료 등 30종

<그림 III-3>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개요



출처: 행정안전부 10월 8일 보도자료, “2,150여종 지방세외수입, 한곳으로 통합·연계 추진”

2. 해외사례

가) OECD 국가

- IMF에서는 각 국가의 세입을 조사하여 통계로 제시하고 있음
 - 2011년까지 대부분 국가들의 세입현황이 기록되었으나, 2012년 이후부터는 한정된 국가들만이 통계가 있음
 - 2011년 세입현황을 연방형 국가와 단일형 국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최근 경향은 통계자료가 가능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연방형 국가의 중앙정부, 즉 연방정부는 자체재원 비중이 평균 99.3%로 매우 높게 나타나지만 세외수입 비중이 평균 5.9%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주정부는 자체재원 비중이 평균 64.6%로 낮게, 세외수입 비중이 평균 15.3%로 높게 나타남
 - 지방정부는 자체재원 비중이 평균 74.3%로 주정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세외수입 비중이 평균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5> OECD 연방형 국가의 세입현황

(단위: %)

구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	스위스	스페인	연방형 국가	
중앙 정부	자체재원	조세수입	89.5	92.7	99.8	92.0	94.9	96.2	88.6	93.4
		세외수입	10.3	6.7	-	7.7	4.3	3.5	2.7	5.9
		합계	99.8	99.4	99.8	99.7	99.2	99.7	91.3	99.3
	이전수입	0.2	0.6	0.2	0.3	0.8	0.3	8.7	1.6	
주 정부	자체재원	조세수입	28.8	50.9	26.9	58.0	70.5	51.5	58.4	49.3
		세외수입	22.6	10.3	-	21.7	10.9	21.3	5.4	15.3
		합계	51.4	61.2	26.9	79.7	81.4	72.8	63.8	64.6
	이전수입	48.6	38.8	73.1	20.4	18.6	27.2	36.2	37.6	
지방 정부	자체재원	조세수입	37.0	68.6	44.8	56.7	39.2	58.7	50.4	50.8
		세외수입	46.2	13.6	-	11.3	25.3	29.8	14.6	23.5
		합계	83.2	82.2	44.8	68.0	64.5	88.5	65.0	74.3
	이전수입	16.8	17.8	55.2	32.0	35.5	11.6	35.0	29.1	

출처: 조임곤(2013), <지방세외수입 확대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재인용

- 단일형국가의 중앙정부는 자체수입 비중이 98.4%로 높게 나타나지만 연방형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며, 세외수입 비중은 12.2%로 연방형 국가보다 높게 나타남
- 지방정부는 자체재원이 52.2%로 연방형국가의 주정부, 지방정부보다 낮게 나타나며 세외수입 비중은 17.1%로 연방형 정부의 주정부보다는 높게, 지방정부보다는 낮게 나타남

<표 III-6> OECD 단일형 국가의 세입현황(2011년)

(단위: %)

구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자체재원			이전수입	자체재원			이전수입
	조세수입	세외수입	합계		조세수입	세외수입	합계	
칠레	89.4	10.5	99.9	0.0	47.8	10.3	58.1	41.9
체코	88.9	4.9	93.8	6.2	45.7	12.0	57.7	42.3
덴마크	97.4	-	97.4	2.6	38.7	-	38.7	61.3
에스토니아	99.8	-	99.8	0.2	53.7	-	53.7	46.3
핀란드	85.4	13.0	98.4	1.6	46.2	24.2	70.4	29.6
프랑스	99.3	-	99.3	0.7	61.8	-	61.8	38.2
그리스	83.7	15.7	99.4	0.6	6.8	25.7	32.5	67.5
헝가리	70.3	27.4	97.7	2.3	20.1	11.6	31.7	68.3
아이슬란드	87.1	12.0	99.1	0.8	75.3	14.3	89.6	10.4
아일랜드	100.0	-	100.0	0.0	27.9	-	27.9	72.1
이스라엘	83.7	11.5	95.2	4.8	43.9	19.9	63.8	36.1
이탈리아	95.8	4.0	99.8	0.2	43.3	12.2	55.5	44.5
일본	85.5	12.8	98.3	1.7	46.8	7.7	54.5	45.6
한국	83.0	17.0	100.0	-	37.2	21.2	58.4	41.7
룩셈부르크	92.6	6.2	98.8	1.2	32.2	19.5	51.7	48.2
네덜란드	90.2	9.3	99.5	0.5	10.9	18.8	29.7	70.2
뉴질랜드	77.3	22.7	100.0	-	53.4	26.0	79.4	20.6
노르웨이	75.8	24.1	99.9	0.1	37.7	18.5	56.2	43.8
폴란드	92.2	3.8	96.0	4.0	29.8	14.4	44.2	55.8
포르투갈	82.4	16.2	98.6	1.5	37.7	24.8	62.5	37.5
슬로바키아	84.5	11.3	95.8	4.2	47.0	13.7	60.7	39.2
슬로베니아	86.4	8.4	94.8	5.2	41.4	19.0	60.4	39.6
스웨덴	89.4	9.8	99.2	0.7	62.5	13.5	76.0	24.0
터키	87.9	12.1	100.0	0.0	-	-	0.0	-
영국	95.9	3.5	99.4	0.6	15.4	14.2	29.6	70.4
단일형국가평균	88.2	12.2	98.4	1.7	40.1	17.1	52.2	45.6

출처: 조임곤(2013), <지방세외수입 확대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재인용

- 한국의 경우 2011년 중앙정부의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단일형 국가 중에서 4번째로 크게 나타남
 - 중앙정부 세외수입 상위 5개 국가는 헝가리(27.4%), 노르웨이(24.1%), 뉴질랜드(22.7%), 한국(17.0%), 포르투갈(16.2%) 순임
 - 해당 결과는 중앙정부 세외수입 비중이 낮은 OECD 연방형 국가를 포함하여도 유지됨

- 2013년 이후 중앙정부의 국세외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액수 측면에서는 호주, 터키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스라엘, 칠레, 한국, 영국도 국세외수입이 감소한 해가 있으나 증가 추세를 보임
 - 반면 스페인과 아이슬란드의 경우 증감이 나타남
 - 본 통계에서 국세외수입은 재산수입(Property income),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Sales of goods and services), 벌금·과태료·몰수추징금(Fines, penalties, and forfeits), 기타(Miscellaneous and unidentified revenue)이며 사회보장기여금(Social contribution)과 교부금(Grants)은 제외됨

<표 III-7> OECD 국가 국세외수입 현황(중앙정부)

(단위: local currency, Millions 이스라엘 / Billions 호주, 스페인, 칠레, 아이슬란드, 터키, 영국/ Trillions 한국)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방형 국가	호주	38.57	39.43	42.84	44.87	50.12	50.63
	스페인	19.28	18.29	13.94	14.44	13.68	14.99
단일형 국가	칠레	2,866.01	3,216.36	3,429.33	3,249.29	3,906.53	4,311.58
	아이슬란드	77.48	91.33	77.59	106.85	117.20	116.25
	이스라엘	16,065.26	16,764.28	18,150.17	17,732.53	18,749.67	18,767.40
	한국	74.21	73.68	72.69	76.48	77.49	78.81
	터키	47.99	50.99	54.90	66.45	68.39	105.77
	영국	47.55	40.61	40.45	41.29	46.24	47.39

출처: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 한국의 GDP 대비 국세외수입 비중은 현재 통계가 활용 가능한 OECD 국가들 중에서 2012년에서 2018년까지 모두 가장 높음
 - 2011년 기준으로 한국보다 국세외수입 비중이 높았던 헝가리 노르웨이 뉴질랜드의 데이터가 사용 불가능함을 감안할 때, 현재도 2011년과 비슷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 가능함
 - 2013년 이후 중앙정부의 GDP 대비 국세외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호주, 칠레, 아이슬란드, 터키가 2013년 대비 2018년 비중이 상승하였음
 - 반면 스페인, 이스라엘, 한국, 영국의 경우 2013년 대비 2018년 국세외수입 비중이 하락하였음

<표 III-8> OECD 국가 GDP 대비 국세외수입 현황(중앙정부)

(단위: %)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방형 국가	호주	2.46	2.44	2.61	2.63	2.77	2.67
	스페인	1.88	1.76	1.29	1.29	1.17	1.24
단일형 국가	칠레	2.08	2.16	2.15	1.92	2.17	2.26
	아이슬란드	3.96	4.40	3.38	4.29	4.49	4.13
	이스라엘	1.52	1.51	1.55	1.45	1.47	1.41
	한국	4.94	4.71	4.38	4.39	4.22	4.16
	터키	2.65	2.49	2.35	2.55	2.20	2.84
	영국	2.70	2.20	2.13	2.10	2.26	2.24

출처: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 한국에서 중앙정부 자체 자원 대비 국세외수입의 비중은 줄고있음
 - IMF 통계의 경우 사회보장기여금과 교부금이 제외된 통계이므로 기존 분석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수입(Property income),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Sales of goods and services), 기타(Miscellaneous and unidentified revenue)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벌금·과태료·몰수추징금(Fines, penalties, and forfeits)의 경우 증감이 있으나 2013년 대비

GDP 비중이 2018년에 증가함

- 벌금·과태료·몰수추징금(Fines, penalties, and forfeits)이 경상이전수입의 주요 항목이며, 부과를 통한 징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리의 중요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II-9> 한국의 IMF항목별 국세외수입 변화

(단위: %)

항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Property income revenue	액수	19.59	18.74	19.34	18.19	17.75	19.07
	GDP 비중	1.36	1.25	1.24	1.10	1.02	1.04
Sales of goods & services	액수	14.04	13.74	13.46	13.98	14.44	14.77
	GDP 비중	0.97	0.92	0.86	0.84	0.83	0.80
Fines, penalties & forfeits	액수	4.68	4.67	5.53	5.18	5.39	6.23
	GDP 비중	0.32	0.31	0.35	0.31	0.31	0.34
Other transfers	액수	35.97	37.06	35.35	35.34	38.90	37.43
	GDP 비중	2.50	2.47	2.26	2.13	2.23	2.04

출처: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나) 미국¹¹⁾

(1) 분류체계

- 미국의 일반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기타세외수입으로 구성됨

<표 III-10> 미국의 일반 세외수입 분류 및 항목

재정수입 항목	분류기호
-일반세외수입(General Revenue)	

11) 주만수·주운현(2015), 지방세외수입 신규수입원 발굴에 관한연구, 지방세연구원을 참고하여 작성

재정수입 항목	분류기호
•경상적 세외수입(Current Charges)	
교육(Education)	A09, A10, A12, A16, A18, A21
고등교육기관(Institutions for Higher Education)	A16, A18
급식판매(School Lunch Sales)	A09
병원(Hospitals)	A36
고속도로(Highways)	A44, A45
공항(Airports)	A01
주차장(Parking Facilities)	A60
항만(Sea and Inland Port Facilities)	A87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A54, A56, A59
공원및놀이공원(Parks and Recreation)	A61
주택개발(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50
하수(Sewerage)	A80
쓰레기관리(Solid Waste Management)	A81
기타사용료(Other Charges)	A89, A03
•기타세외수입(Miscellaneous general revenue)	
이자 (Interest Earnings)	U20
특별분담금(Special Assessments)	U01
재산매각(Sale of Property)	U11
기타수입(Other General Revenue)	U21, U30, U40, U41, U50, U95, U99

출처: United States Census Bureau

- 먼저 경상수입의 경우 국방 및 국제관계와 우편서비스에 의한 세외수입은 연방정부가 독점적으로 부과하며 이와 달리 대부분의 세부항목들은 여러 정부유형들이 동시에 부과함
- 경상적 세외수입(current charges)은 정부가 제공하는 경상적 서비스로부터 편익을 얻은 개인들에게 부과하여 얻은 수입 혹은 일반 정부활동과 연관된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로부터 얻은 수입임

- 정부가 특권을 부여하고 부과하는 면허세(license taxes) 및 규제활동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징수하는 수수료와는 차별화됨
- 특별분담금(special assessments), 다른 정부로부터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받은 수입금, 동일한 정부 내에서 부처 간 혹은 회계 간 사용료 및 수수료는 제외하여 기타 일반재정수입으로 분류함
- 전기, 수도 등의 공공서비스 판매수입 및 주류가게의 판매수입도 제외하여 이들을 각각 공공요금 수입 및 주류 판매수입으로 분류함

<표 III-11> 미국의 정부유형별 경상적 세외수입

분류기호	경상적 세외수입의 분류	연방정부	주정부	대도시(카운티)	기타 지방정부	특별구역
A06	국방 및 국제관계	Y	N	N	N	N
A14	우편서비스	Y	N	N	N	N
A01	항공교통(공항)	Y	Y	Y	Y	Y
A03	기타 영업활동	N	Y	Y	Y	N
A09	학교점심	N	Y	Y	Y	N
A10	학교등록금	N	Y	Y	Y	N
A12	기타 초중등교육	N	Y	Y	Y	N
A16	부수적 기업활동	N	Y	N	N	N
A18	기타 고등교육	N	Y	Y	Y	N
A21	기타 교육	Y	Y	N	N	N
A36	공공병원	Y	Y	Y	Y	Y
A44	일반도로	N	Y	Y	Y	Y
A45	유료도로	N	Y	Y	Y	N
A50	주택 및 지역개발	Y	Y	Y	Y	Y
A54	농업	Y	Y	N	N	N
A56	산림	Y	Y	N	N	N
A59	기타 천연자원	Y	Y	N	N	Y
A60	주차시설	N	N	Y	Y	Y
A61	공원과 여가	Y	Y	Y	Y	Y
A80	하수도	N	Y	Y	Y	Y
A81	쓰레기관리	Y	Y	Y	Y	Y
A87	수상운송 및 터미널	Y	Y	Y	Y	Y
A89	기타 일반경상수입	Y	Y	Y	Y	Y

출처: 주만수.주운현(2015)의 <표III-11> 재인용

- 기타 세외수입의 세부항목별 부과 및 징수주체는 각 정부유형의 역할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남
- 기타 세외수입(Miscellaneous General Revenue)은 자체재원 중에서 조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주류 판매수입, 공공요금 수입, 보험기금수입을 제외한 모든 다른 일반재원 형태의 수입으로 구성됨
 - 특별분담금은 일반적으로 도로포장, 가로등 및 인도 설치 등의 일회성 자본개선사업을 위해 부과되는 반면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청소, 가로등 켜기, 나뭇잎 청소 등 지속적인 반복적인 서비스를 위해 부과됨
 - 재산매각(Sale of Property)수입에서 유가증권의 매각대금, 채납세금 및 재산차압에 따른 재산매각대금(T01), 주인이 없거나 몰수된 재산, 그리고 일반상품 및 소형 개인용 물품의 매각대금(U99)은 포함하지 않음
 - 기타 세외수입 중 임대료(rents)와 특권사용료(royalties)는 건물, 토지, 기타 재산 혹은 권리의 일시적인 소유, 이용, 개발을 위한 보상금을 말함. 일반 경상적 세외수입에 포함된 임대수수료와는 달리 기타 세외수입의 임대료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수입임

<표 III-12> 미국 정부유형별 기타 세외수입

분류기호	기타 세외수입의 분류	연방정부	주정부	대도시(카운티)	기타 지방정부	특별구역
U01	특별분담금	N	Y	Y	Y	Y
U10	재산매각수입: 주택 및 지역개발	N	N	Y	N	N
U11	재산매각수입: 기타	Y	Y	Y	Y	Y
U20	이자수입	Y	Y	Y	Y	Y
U30	벌금 및 몰수금	Y	Y	Y	N	N
U40	임대료	N	Y	Y	Y	N
U41	특권사용료(Royalties)	N	Y	N	N	N
U50	민간기부금	N	Y	N	N	N
U95	순 복권수입	N	Y	N	N	N
U99	기타 일반재정수입, NEC	Y	Y	Y	Y	Y

출처: 주만수.주운현(2015)의 <표III-18> 재인용

(2) 세외수입 현황 및 신규발굴 원칙

- 미국은 연방국가로 주정부가 단일형 국가의 중앙정부 역할을 연방정부와 함께 수행하므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현황을 살펴보고 분석의 의의를 찾고자 함
-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일반세외수입의 액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자체재원대비 비중은 약 31%임
 - 자체재원 대비 비중은 2016년 31.07%, 2017년 31.42%, 2018년 30.93%로 31%내외에서 증감이 나타남
 - 일반세외수입에서는 사용료인 경상적 세외수입 항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교육과 병원이 경상적 세외수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함
 - 매각수입은 일반세외수입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최근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서 매각수입으로 재정을 보완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재정활동임을 의미한다는 지적이 있음

<표 III-13>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외수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액수	자체재원 대비 비중
자체재원	2,324,383,039	2,410,964,413	2,550,300,128	100.00
-지방세	1,602,017,996	1,653,350,530	1,761,402,148	69.07
-일반세외수입	722,365,043	757,613,883	788,897,979	30.93
•경상적 세외수입	504,268,080	527,548,393	547,532,991	21.47
교육	131,241,601	134,565,241	137,535,884	5.39
고등교육기관	115,406,297	118,574,065	121,544,630	4.77
급식판매	5,638,119	5,602,682	5,517,821	0.22
병원	151,433,644	160,684,861	168,417,194	6.60
고속도로	19,170,989	20,505,144	21,809,373	0.86
공항	22,671,980	24,364,778	24,962,869	0.98
주차장	3,106,890	3,256,805	3,230,461	0.13
항만	5,257,423	5,750,444	5,960,384	0.23
천연자원	4,742,114	5,173,666	5,419,488	0.21

구분	2016	2017	2018	
			액수	자체재원 대비 비중
공원및놀이공원	10,960,124	11,417,878	11,769,274	0.46
주택개발	6,916,439	7,138,533	7,259,983	0.28
하수	55,905,543	58,125,679	60,930,483	2.39
쓰레기	17,744,970	18,347,471	18,822,147	0.74
기타사용료	75,116,363	78,217,893	81,415,452	3.19
•기타세외수입	218,096,963	230,065,490	241,364,988	9.46
이자	47,428,903	52,286,993	57,728,625	2.26
재평가수입	8,781,200	9,978,340	10,494,054	0.41
재산매각	4,115,075	4,420,223	3,924,206	0.15
기타수입	157,771,785	163,379,934	169,218,104	6.64
공익사업	164,479,007	168,369,916	173,692,276	6.81
-상수도	62,205,248	65,413,455	69,192,145	2.71
-전기	78,970,646	80,147,254	80,911,747	3.17
-가스	6,558,699	5,986,085	6,280,180	0.25
-대중교통	16,744,414	16,823,122	17,308,204	0.68
주류판매	9,240,896	9,606,403	10,052,133	0.39

출처: United States Census Bureau, State&Local Government Finance Datasets

- 주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하여 자체재원 대비 일반세외수입의 비중이 낮음
-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형 국가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비해 세외수입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함
 - 주정부의 사용료 수입 비중은 지방정부에 비해 낮고 기타세외수입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III-14> 2018년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외수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주정부 +지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액수	비중	액수	비중
자체재원	2,550,300,128	1,409,840,668	100.00	1,140,459,460	100.00
-지방세	1,761,402,148	1,022,783,253	72.55	738,618,895	64.77
-일반세외수입	788,897,979	387,057,415	27.45	401,840,564	35.23
•경상적 세외수입	547,532,991	235,935,966	16.73	311,597,025	27.32

구분	주정부 +지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액수	비중	액수	비중
교육	137,535,884	113,534,608	8.05	24,001,276	2.10
고등교육기관	121,544,630	112,483,929	7.98	9,060,701	0.79
급식판매	5,517,821	30,235	0.00	5,487,586	0.48
병원	168,417,194	73,591,312	5.22	94,825,882	8.31
고속도로	21,809,373	12,696,887	0.90	9,112,486	0.80
공항	24,962,869	1,926,588	0.14	23,036,281	2.02
주차장	3,230,461	30,202	0.00	3,200,259	0.28
항만	5,960,384	1,937,260	0.14	4,023,124	0.35
천연자원	5,419,488	3,149,146	0.22	2,270,342	0.20
공원및놀이공원	11,769,274	1,739,065	0.12	10,030,209	0.88
주택개발	7,259,983	859,350	0.06	6,400,633	0.56
하수	60,930,483	1,041,712	0.07	59,888,771	5.25
쓰레기	18,822,147	268,799	0.02	18,553,348	1.63
기타사용료	81,415,452	25,161,037	1.78	56,254,415	4.93
•기타세외수입	241,364,988	151,121,449	10.72	90,243,539	7.91
이자	57,728,625	39,634,498	2.81	18,094,127	1.59
재평가수입	10,494,054	16,055	0.00	10,477,999	0.92
재산매각	3,924,206	1,138,328	0.08	2,785,878	0.24
기타수입	169,218,104	110,332,568	7.83	58,885,536	5.16
공익사업	173,692,276	14,018,753	0.99	159,673,523	14.00
-상수도	69,192,145	326,497	0.02	68,865,648	6.04
-전기	80,911,747	9,540,881	0.68	71,370,866	6.26
-가스	6,280,180	10,742	0.00	6,269,438	0.55
-대중교통	17,308,204	4,140,633	0.29	13,167,571	1.15
주류판매	10,052,133	8,498,997	0.60	1,553,136	0.14

출처: United States Census Bureau, State&Local Government Finance Datasets,

□ 주정부 전체 세입 대비 일반세외수입 비중은 2016년 16.49%에서 2018년 14.72%로 감소함

○ 주정부 일반세외수입의 액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음

- 그림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감소한 것은 보험신용기금(insurance trust funds)이 2017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표 III-15> 2018년 미국 주정부 세입변화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액수	비중	액수	비중	액수	비중
세입	2,141,806,161	100.00	2,529,480,574	100.00	2,630,221,402	100.00
일반세입	1,918,123,251	89.56	1,976,011,980	78.12	2,097,993,695	79.76
-보조금	641,628,610	29.96	658,791,527	26.04	688,153,027	26.16
-자체재원	1,276,494,641	59.60	1,317,220,453	52.07	1,409,840,668	53.60
지방세	923,258,860	43.11	946,076,690	37.40	1,022,783,253	38.89
일반세외수입	353,235,781	16.49	371,143,763	14.67	387,057,415	14.72
·경상세외수입	215,373,319	10.06	225,944,001	8.93	235,935,966	8.97
·기타세외수입	137,862,462	6.44	145,199,762	5.74	151,121,449	5.75
공익사업	13,827,805	0.65	13,607,538	0.54	14,018,753	0.53
주류판매	7,818,484	0.37	8,158,551	0.32	8,498,997	0.32
보험신용기금	202,036,621	9.43	531,702,505	21.02	509,709,957	19.38

출처: United States Census Bureau, State&Local Government Finance Datasets,

- 1997년 전미주의회회의(NCSL: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의 재정위원회는 조세와 사용자부담금이 혼재되어 있을 때의 사용자부담금(사용료와 수수료, 이하 사용료 및 수수료)을 부과하는 합리적 근거에 관하여 다섯가지 원칙을 설명함
 - 첫째, 사용료는 정부가 각각의 세금 납부자에게 혜택을 협소하게 주는 서비스(건설 허가비) 혹은 사적부문 공급자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정부 활동을 수행할 때(헬스 및 건강 이용시설과 정부 재산의 임대) 적절함
 - 둘째, 사용료는 공공 재원 이용을 촉진하거나 저지시킬 수 있는 시장 중심 동기를 제공하는데 적절하므로 이러한 유인(환경정화를 통한 오염감소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입이 필요함
 - 셋째, 정책결정자들은 광범위한 세금 중심(broad-based taxes)에서 사용료로의 전환이

저소득과 중간 소득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 일반 세금에서 사용료로의 전환이 저소득 가계가 고소득 가계만큼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서비스의 자금을 조성한다면 사용료로의 전환은 저소득 가계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임

- 사용료의 부과는 서비스를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해야하는 헌법적 혹은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무료 공공교육 등)에는 적절하지 못함
- 사용료는 특정서비스 수익자들이 해당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즉 사용료는 관련되지 않은 정책과 서비스에 전용되는 초과 세입을 유발시키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됨

다) 일본

(1) 일본의 지방세외수입 현황 및 운용¹²⁾

- 일본 지방정부의 지방세입은 일반재원과 기타재원으로 구분됨
 - 일반재원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세, 지방특례교부금으로 구성됨
 - 기타재원은 지방채, 국고지출금, 사용료, 수수료, 재산소득, 기타 수익 등으로 구성됨
 - 2011년 결산 기준 전체 지방세입 규모는 100조 686억 46백만 엔이며, 이 중 일반재원이 55조 4,576억 15백만 엔(55.4%), 기타재원이 44조 6,120억 32백만 엔임(44.6%)

- 이 중 사용료, 수수료, 재산소득, 기타 수익이 지방세외수입에 해당됨
 - 지방세외수입은 10조 1,514억 21백만 엔으로 전체 지방세입 100조 696억 46백만 엔의 10.1%
 - 2011년 결산 기준 전체 지방세외수입 중 사용료와 수수료는 2조 87억 51백만 엔(2.0%), 재산소득이 5,282억 49백만 엔(0.5%), 기타 수익이 7조 6,114억 21백만 엔(7.6%)임

- 독촉 :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을 미납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독촉

12) 최원구(2015), <일본의 지방세외수입 법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참고하여 작성함

해야함

- 일본 지방자치단체 채권의 종류는 기인하는 법률이 공법인가 사법인가에 따라 공채권과 사채권으로 구분하고, 공채권은 강제징수 공채권과 비강제징수 공채권으로 구분됨
- 공채권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31조의 3 제1항에 의거하여 독촉하고, 사채권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4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에 의거하여 독촉하여야 함
- 연체금의 금액은 조례로 규정하는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연 14.6%(1개월 이내에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연 7.3%)의 비율로 부과함
 - 연체금 부과 비율은 크게 (1) 연 14.6%, (2) 연 14.6%를 기본으로 하고, 일정 기간 이내(대부분 1개월)에 완납하였을 경우 연 7.3%, (3) 연 10.75%, (4) 연 7.3%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연체금의 부과 방식은 위의 연체금 부과 비율을 연체한 날수에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임. 예를 들어, 연 14.6%의 연체금을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50일을 연체한 경우에는 ‘50일×(14.6%/365일)×연체금액’의 방식으로 계산함
 - 그 외 100엔에 대하여 1일 4전(0.01엔)을 연체금으로 부과하는 아사히가와시(旭川市), 강제징수 공채권의 경우는 연 14.6%(1개월 이내 납부하였을 경우 연 7.3%)를 부과하고 비강제징수 공채권은 연 5%의 연체금을 부과하는 니가타시(新潟市)의 경우도 있음
- 인허가 거부 및 명단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율을 높이고 채무자 간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시나 현에서 채권 체납자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한하기도 함
 - 카나가와현(神奈川県)과 오다와라시(小田原市)는 체납자에 대한 행정서비스 인허가거부 및 체납자 명단공개를 시행하고 있음
 - 카나가와현 오다와라시와 같이 체납자 명단공개까지는 아니지만, 행정서비스를 제한하는 조례 및 요강을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한하는 행정서비스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이며 또한 대상채권도 지방세에서 지방세외수입으로 확대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채권관리에 대한 조사·연구 진행 : 지방자치단체의 채권관리에 대

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그 방안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지방공공서비스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동경의 전 시정촌이 설립한 싱크탱크인 “동경시정촌자치조사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관리를 위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여 채권관리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함

(2) 일본의 지방세외수입 법제¹³⁾

- 징수방법의 위임규정 : 일본의 지방세외수입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의 조문별로 그 징수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그 징수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제2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
 - 일본 지방자치법 제228조의 제1항 전단에서 “분담금, 사용료, 가입금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채권징수의 기본 법적근거 : 또한 지방세외수입 채권의 징수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40조 제2항에 있음
 - 지방자치법 제240조 제2항이 “보통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의 독촉, 강제집행, 그 외 채권의 보전 및 징수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관련한 모든 채권이 독촉, 연체금 부과 등의 채권관리가 가능함
 -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모든 지방세외수입의 채권관리에 관한 기본적 규정이 법률로 정해져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체납처분의 명문화 : 일본의 지방자치법 제231조의3은 부담금, 분담금, 가입금, 과태료 및 법정사용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13) 최원구(2015), <일본의 지방세외수입 법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참고하여 작성함

- 지방자치법 제231조의3은 독촉의 법적근거(제1항), 수수료 및 연체금 징수의 법적근거(제2항)를 제시하고 있음
- 또한 동조 제3항은 채납처분에 관한 조문으로, “보통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담금, 부담금, 가입금, 과태료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용료 (중략) 이들 징수금의 선취특권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분담금, 부담금, 가입금, 과태료 및 법정사용료는 조세, 즉 국세 및 지방세 다음의 순위를 가짐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에서 사용료, 수수료 및 분담금에 관한 징수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는 사용료, 수수료 및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사용료, 수수료 및 분담금을 제외한 다른 지방세외수입에 관해서는 조례로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는 상황임

□ 채권관리 표준 조례안의 제정: 동경시정촌자치조사회는 채권의 일반적 관리를 위한 표준 조례안을 제정함

- 동경시정촌자치조사회의 연구보고서가 제시하는 채권관리 표준조례안은 일본의 많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표준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채권관리조례 제정의 활성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음
- 이를 우리나라의 2013년 제정되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표 III-16> 일본 채권관리 표준 조례안과 우리나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비교

조문	채권관리 표준조례안의 내용	비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1조(목적)	채권관리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대하여 - 채권관리의 ‘적정’을 기할 것 규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 채권관리 사무에 필요한 사항	○	제1조
제2조(정의)	조례가 적용되는 채권의 정의에 대하여 - 지자체의 채권, 지방세, 공과, 기타 채권의 정의	○	제2조(시행령에 따라 별표에 규정)

조문	채권관리 표준조례안의 내용	비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3조(타법령 등과의 관계)	법령 등과의 적용 관계에 대하여 - 일반원칙으로서의 조례 -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됨	×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 없음
제4조(단체장의 책무)	단체장의 책무에 대하여 - 단체장의 책무 확인 - 체재 준비의 필요성	×	-
제5조(대장의 정비)	대장을 정비할 것에 대하여 - 단체장의 책무 확인 - 체제 준비의 필요성	×	-
제6조(징수계획)	징수계획을 책정하는 것에 대하여 - 계획적인 징수를 위하여, 징수계획을 책정할 것	×	-
제7조(독촉)	독촉할 것에 대하여 - 채권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독촉할 것	○	제8조
제8조(체납처분 등)	체납처분 할 것에 대하여 - 지방세 및 공과의 체납처분 등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것	○	제8조~제19조
제9조(강제집행 등)	강제집행 할 것에 대하여 - 독촉 후 상당기간이 경과해도 채권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는 강제집행, 소송수속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제9조, 제19조(국세징수법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 준용)
제10조(전결처분)	소송 제기 등에 관한 전결처분에 대하여 - 전결처분 확인 - 의회에의 보고 필요성	×	-
제11조(이행기한 단축)	이행기간 단축에 대하여 - 이행기한의 단축 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말고 채무자에게 통지	×	-
제12조(채권신청 등)	채권 신청할 경우에 대하여 -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등에는 바로 배당요구 등을 할 것	○	제19조(국세징수법의 교부청구 참가압류 규정 준용)
제13조(징수정지)	채권의 징수를 정지하는 경우에 대하여 - 채무자가 소재불명 또한 압류재산이 없는 경우 등에는 징수하지 않는 징수정지의 절차를 할 것	○	제16조
제14조(이행연기 특약)	이행연기 특약을 행할 경우에 대하여 -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전무할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특약 등을 할 수 있다는 것	○	제17조

조문	채권관리 표준조례안의 내용	비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15조(면제)	채무의 면제가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 이행연기 특약 후 10년 경과 후에도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전무할 경우에는 채권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	×	-
제16조(포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채권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 채무자가 현저하게 생활곤란상태이거나 실종 등의 경우에는 채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 -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할 것	○	제19조(지방세기본법의 결손처분 규정 준용)
제17조(위임)	상세한 사항은 규칙 등에 위임할 것	×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음

출처: 최원구 외(2017) 재인용

(3) 일본의 지방세외수입 징수제도의 특징¹⁴⁾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절차에 관한 통합적 법률을 따로 두지 않고 지방자치법에서 몇 가지 중요한 규정을 통괄적으로 두고 있음
 - 지방세외 수입의 부과와 징수절차의 방식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다양한 법률적 부과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지방자치법과 각 지자체의 ‘수수료조례’, ‘수수료징수조례’를 통하여 부과, 징수가 이루어짐
 - 구체적인 징수절차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세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법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하며 나머지 사항에 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르도록 함
 -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지방자치법에서 강제징수절차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고 있음
 - 강제징수절차에 관한 통합적 절차가 필요함을 인식
 - 특히 지방세외수입의 선취특권에 관한 규정 : 법률이 정한 특수채권을 가진 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무자의 재산에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던 권리를 말하는 선취특권에 대해, 일본 지방자치법은 지방세외수입이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으로 선취특권을 갖는다고 명문화
 - 이는 세외수입의 징수순위를 조세의 다음으로 함으로써 지방재정에서 지방세외수입이

14) 한국법제연구원(2010),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의 징수절차에 관한 통합법 제정연구>를 참고하여 작성

차지하는 비중과 징수 절차상의 중요성을 반영한 법 규정이며, 지방세외수입 징수의 중요성을 법률에 의해 보장하고 있는 규정임

□ 세외수입통합절차법의 제정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

- 재정상 사용료, 수수료 수입액 비중이 낮아 2008년 기준 일본의 세외수입의 전체 지방재정에 대한 비중은 15.7% 정도로 우리나라의 24.1%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사용료, 수수료의 유형이 수백 가지에 달하여 그 구조가 복잡한 것도 징수절차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됨

□ 세외수입 부과의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과 수수료 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세외수입 부과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계산 방법, 수수료 납부 방법, 징수시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강제징수절차에 대해서는 두고 있지 않음
- 수수료 법제의 단일화 : 일본에서는 수수료 법제 단일화 취지에 따라 “지방공공단체 수수료의 표준에 관한 정령” 을 두어 사용료와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고 있음

□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절차

- 서류송달과 공시송달, 상속에 의한 납부의무의 승계, 수수료 처분 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세외수입 강제집행에 관한 절차

- 각 법률에서 납부 의무 불이행시 강제징수 규정을 두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보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강제집행과 관련된 통괄적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두고 있음
- 지방자치법상 수수료 등에 대한 강제처분 절차 : ①독촉, ②체납처분과 선취특권의 순위, ③독촉과 체납처분 등에 대한 불복절차, ④부과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

고 있음

- 독촉 : 분담금, 사용료, 가입금, 수수료 및 과태료 기타 밖의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세입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며, 독촉장을 보낸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및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음
- 체납처분과 선취특권의 순위 :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세입에 대해 독촉을 받았던 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그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세입 및 당해 세입에 관계된 수수료 및 연체금에 관하여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처분할 수 있음. 이 경우 징수금 선취특권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으로 하고 있음
- 독촉, 체납처분 등에 대한 불복절차 : 독촉, 체납처분 등에 관한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 부과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 사기 그밖에 부정행위에 의해 분담금, 사용료, 가입금 또는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둘 수 있으며, 이것 이외의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도 조례로 5만 엔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라) 독일¹⁵⁾

□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부과, 징수가 인정됨

- 세외수입의 대상 : 주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이 주된 대상임
-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와 당사자의 권리보호: 구체적인 부과, 징수절차에 대해서는 각 주의 지방공과금법에 규정을 두고 있고, 많은 경우 연방조세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세와 유사한 정도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호 등이 행해지고 있음
-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절차에 있어 법률유보원칙의 준수 : 많은 경우에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준용규정을 두는 입법형태가 아니라 적용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입법형태를 취하고 있음
- 세외수입의 부과절차와 강제징수를 포함한 징수절차는 모두 부담적인 행정작용, 행정절차로서 성격을 가지므로 법률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포

15) 한국법제연구원(2010),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의 징수절차에 관한 통합법 제정연구>를 참고하여 작성

괄적 준용규정만으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절차에 있어 의무자의 기본권 제한은 비례원칙 하에서만 가능하며, 강제징수절차에 있어 조세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고 조세채권과 평등한 가치를 지님

□ 세외수입 산정원칙

- 수수료와 사용료의 산정원칙에 있어 평등원칙, 등가원칙, 비용보전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 평등의 원칙: 부당한 목적에 지향된 사용료의 산정을 통제하고 일정한 범위에서 급부의 비례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등가의 원칙: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이용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 비용보전의 원칙: 사용료가 행정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일정 회계기간에 있어 예상되는 사용료 수입이 그 기간 동안 사용료 납부의무를 야기하는 행정급부에 소요되는 총체적 비용을 초과하지 않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사회국가 원칙: 사회적 약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는 부모의 수입에 따라 유치원 이용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원리

□ 세외수입 부과, 징수 절차

- 독일의 각 주는 지방공과금법(Kommunalabgabengesetz)상 부과, 징수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많은 내용은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공과금법은 공과금 부과 및 징수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납부의 고지와 공과금의 포탈 및 탈루, 위협범에 대해서만 직접규정을 두고 나머지 절차는 조세기본법을 적용
- 공과금납부의무의 발생과 소멸
 - 공과금 의무는 개별 법률에서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사실행위가 실현되면 발생한 것으로 봄(조세기본법 제38조)
 - 공과금 의무는 조세기본법 제47조에 의거 납부, 공과금액과 환금액의 정산, 면제, 부과

제척기간의 경과, 징수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해 소멸됨

○ 공과금의 부과

- 부과 원칙 : 법률에 의해 공평하게 부과하고 징수할 의무, 재무행정기관의 객관성과 중립성, 자신에 대한 조세 부과과정에 협조할 의무, 자신에 대한 재무행정기관의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공과금의 결정 : 공과금과 관련된 사시관계의 확인이 이루어진 뒤 재무행정기관은 고지서의 송달을 통해 조세채권을 확정
- 납세고지서를 통한 조세부과 : 공과금의 확정은 고지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세금고지서와 형태와 내용에 대한 것도 조세기본법에서 규정

○ 공과금의 징수

- 납부의무 및 기한 : 공과금채무관계가 성립하면 이로 인한 청구권이 실행되며, 납부의 기한은 재무행정기관이 납부의무자에게 공과금채무관계로부터 납부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시작됨
- 징수유예 : 재무행정기관은 납부기한 내의 징수가 납부의무자에게 현저하게 가혹한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하여 청구권이 위태롭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과금채무관계로 발생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유예할 수 있음
- 징수권의 소멸 : 과세당국의 징수권은 납부의무자의 납부, 다른 환급권과의 상계, 면제 그리고 징수권 소멸시효의 경과를 통하여 소멸됨
- 지급시효 : 공과금채무관계에 의해 발생한 청구권에는 특별한 지급시효가 적용되며 이 때 지급시효는 5년이 됨

마) 시사점

□ OECD: 국세외수입 관리의 중요성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중앙정부의 세외수입의 비중은 2011년 OECD 단일형 국가 중 4번째, 2012년에서 2018년까지 통계를 제공하는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

나 매우 높은 편에 속하므로 국세외수입이 중요한 국가재정요소임을 알 수 있음

- 다만 세외수입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원천이 되기 위해서는 체계 정비가 필요함

□ 미국: 경상성을 기준으로 하는 세외수입 분류체계의 정비 필요성

- 미국의 경우 세외수입의 경상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분류 기준으로 하며, 부과징수 주체가 달라지더라도 세외수입의 시스템은 동일하고 세목의 정의가 명확함
- 또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능별로 세분류하며 기타 세외수입은 기능별 분류가 어려운 항목들을 성질별로 세분류함
 - 성질별 분류란 세입대상 혹은 품목별로 구분하는 것을 말하며, 기능별 분류란 정부의 기능별(활동영역별)로 세입 내용을 구분하는 것임
- 경상적인 성격을 가진 세외수입을 분류하는 것은 세입예측을 용이하게 하여 세외수입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세분류도 경상성 여부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또한 세외수입 시스템의 일관성은 업무의 편의성과 일반 국민들의 이해 수월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 목이나 세목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세목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하거나 제외되어야하는 세외수입의 종류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 세외수입 비중의 감소를 고려한 신규 발굴사업 추진 및 고안

- 세외수입의 액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가가 있으나, 총수입 대비 세외수입비중의 감소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임
- 세외수입을 통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미수납 관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신규 발굴의 사업이 필요함
- 또한 적절한 세외수입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음
-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세외수입 발굴을 위해서 미국이 사용자부담금(사용료 및 수수료)을 합리적으로 부과하는 원칙과 같이 다양한 국세외수입 항목에 대한 발굴 원칙을 마

련할 필요가 있음

□ 일본 : 세외수입 ‘강제징수절차’에 대한 총괄적 규정

- 일본의 경우 세외수입통합절차법의 제정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지방자치법에서 몇 가지 중요한 규정을 통괄적으로 두고 있음
 - 지방세의 수입의 부과와 징수절차의 방식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다양한 법률적 부과 근거를 가짐
 - 구체적인 징수절차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세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총괄적으로 규정하며 나머지 사항에 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르도록 함
-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지방자치법에서 ‘강제징수절차’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고 있음
 - ①독촉, ②체납처분과 선취특권의 순위, ③독촉과 체납처분 등에 대한 불복절차, ④부과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 이는 강제징수절차에 관한 통합적 절차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임
 - 지방세외수입의 선취특권에 관한 규정 : 법률이 정한 특수채권을 가진 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무자의 재산에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던 권리를 말하는 선취특권에 대해, 일본 지방자치법은 지방세외수입이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으로 선취특권을 갖는다고 명문화
 - 이는 세외수입의 징수순위를 조세의 다음으로 설정하여 지방재정에서 지방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징수 절차상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며, 지방세외수입 징수의 중요성을 법률에 의해 보장하고 있는 것임
- 이는 통합적 법률에서 ‘강제징수절차’에 대한 총괄적 규정을 둘 필요성을 시사함

□ 독일 : 단일화 된 법률을 통한 세외수입 부과·징수 절차 명확화

- 독일의 경우 지방공과금에 관한 사항을 각 주의 지방공과금법(Kommunalabgabengesetz)이라는 단일한 법률로 규율하며, 세외수입의 부과와 징수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규정내용 : 지방공과금법은 공과금 부과 및 징수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납부의 고지와 공과금의 포탈 및 탈루, 위험범에 대해서 직접규정을 두고 나머지 절차는 조세기본법을 적용
- 독일의 지방 세외수입 부과, 징수절차는 우리나라와 같이 포괄적인 준용규정을 두는 입법형태가 아니라 적용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열하는 입법형태를 취하고 있음
 - 특히 세외수입의 부과절차와 강제징수를 포함한 징수절차는 부담적인 행정작용, 행정절차이므로 법률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함
 -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줌으로써 법률유보원칙을 엄격히 준수함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입법형태는 절차의 집행에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이 보다 엄격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함
- 독일의 사례는 국세외수입의 부과 및 체납절차가 대부분 준용규정을 통해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시사점을 줌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국세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준용규정은 편리한 입법기술이지만, 남용되는 불명확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 통일성을 상실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음
 - 자의적인 행정청의 결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 법률적 분쟁을 남기기 때문에 국세외수입 강제징수에 대한 통일적 해결이 필요함
 -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지방공과금법은 지방세외수입을 통괄하는 통합적 법체계이며, 여기에서 공과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대한 직접규정을 두어 불명확한 해석의 여지를 없애는 동시에 엄격한 법률유보원칙을 통해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한다는 의의를 지님

IV. 국세외수입 관리체계 및 문제점 분석

- 본 장에서는 국세외수입과 관련된 현행 관리체계를 논의하고 관련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함
 - 국세외수입에 대한 현행 관리법을 소개하고 문제점을 분석함
 - 국세외수입의 환류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함
 - 국세외수입의 징수 및 체납과 관련하여 개선의 동기 및 유인과 관련된 제도를 소개하고 문제점을 분석함
 - 국세외수입의 관리역량과 관련된 제도 및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함
 - 국세외수입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현행 정보시스템을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분석함

1. 관리법의 미비

- 국세외수입은 다수의 소관부서에서 개별법령에 의해 부과되고 있으며, 국가채권관리법과 국고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법에서 관리하는 대상은 국세외수입보다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국세외수입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세외수입의 범위 및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에 해당하는 국세외수입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세외수입의 범위는 국세수입을 제외한 모든 수입(국세외수입+기금수입)으로 정의되어 있음
 - 류덕현 외(2017)에서는 세입과목 기준으로 별도의 관리체계가 있거나 관리로 인한 수입 증가의 한계가 있는 3개 관 (사회보장기여금, 용자 및전대차관원금회수,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을 제외한 6개 관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수입대체경비수입, 관유물매각대)을 논의의 대상에 해당하는 국세외수입의 범위로 분류하였고, 본 장에서도 동일한 범위를 따름

○ 이상의 분류를 적용할 경우 전체 국세외수입 중 논의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2019년 결산기준으로 전체 179.3조원 중 84.7조원으로 전체의 47.2%에 이릅니다

□ 국가채권관리법의 내용과 해당 법 시행령에 의한 법 적용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로 정의되어 있음
- 채권관리사무: ‘국가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하는 채권의 보전, 행사, 내용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로 정의되어 있음
- 적용대상: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해당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보장기여금,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용자회수금, 예금, 조세채권 등이 국가채권법의 대상임. 이는 국세외수입보다 대상범위가 포괄적임을 알 수 있으며, 본법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 제외 채권을 명시하고 있음

<p>「국가채권관리법」 제3조(적용 제외 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36조와 제37조를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벌금, 과료(科料), 형사추징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2. 증권으로 되어 있는 채권 3.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 4. 보관금(保管金)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5. 기부금에 관한 채권 6. 국세 및 관세와 이의 징수에 관련된 채권 <p>「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3조(벌금 등에 준하는 채권)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관세법」 제311조,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도로교통법」 제163조와 「경범죄 처벌법」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발생하는 채권 2.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사소송비용에 속하는 채권 3.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따른 가납판결로 발생하는 채권 4. 「형사소송법」 제151조 및 제177조에 따라 비용부담을 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 5. 「형사소송법」 제103조에 따라 보증금의 몰취를 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 6. 「소년법」 제42조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속하는 채권 7. 「군사법원법」 제143조 및 제391조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

- 2019년 결산기준 국세외수입은 179.3조원이고, 이 중 경상이전수입은 36.1조원으로 전체 국세외수입의 20.1%에 이르고 있으며, 류덕현 외(2017)의 분류를 적용할 경우 국세외수입의 42.6%에 해당함
- 경상이전수입 중 수납률이 저조한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의 경우 그 규모가 2019년 기준 2조 5266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국가채권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가채권관리법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현재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채권관리법은 국세외수입의 일부를 포함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이와 같은 문제는 국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법에 의존하여 왔고, 국가채권관리법의 제정목적이 채권관리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책임소재 명확화에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국세외수입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별도의 법 제정 또는 기존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세외수입은 일선 중앙관서 공무원(채권관리관)이 수백 개의 법률로 각기 부과·징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세수입 부과 이외의 체납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 개별법 별로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통일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국민의 권익보호와 실무상 적용을 위한 규정도 미비하게 되고,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장치가 미흡하게 됨¹⁶⁾

□ 지방세외수입의 경우도 2013년 지방세외수입법 제정 이전에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법 규정이 개별법에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법집행의 어려움이 있었음

- 이는 입법 당시 각종 세외수입의 근거규정에만 관심을 두고 절차법 규정을 소홀히 한

16) 마정화(2015)

데 그 원인이 있음¹⁷⁾

- 2013년 “지방세외수입법” 제정 이후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액이 감소하였으며, 징수율은 증가하였음. 또한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 체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목들의 징수율이 증가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됨
- 해당 법은 2020년에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음

<그림 IV-1> 지방세외수입법 제정 후 체납액 및 징수율 변화 추이(억원, %)



자료: 2020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재구성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국세외수입 전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법적 토대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사료됨
- 예를 들면,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국고금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해 각각 관리되고 있고, 기금의 경우 국가재정법과 개별 법률에 관리와 운용의 기준 및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경우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 및 운용되고 있어 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⁸⁾

17) 마정화(2015)

18) 류덕현 외(2017)

2. 환류체계의 미비

- 국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하여 국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국세외수입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환류체계가 불충분한 실정임
- 현재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하여 “국가채권관리 성과평가”가 수행되고 있으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가채권관리법의 대상이 국세외수입 보다 포괄적이어서 국가채권관리에 대한 성과평가는 국세외수입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평가기간이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확정 후 2개월로 되어 있어서 다른 평가에 비해서 평가기간이 짧은 측면이 있음
 - 국가채권관리에 대한 성과평가는 5개의 지표(성과목표의 적정성, 추진 체계의 적정성, 채권관리의 적절성, 업무성과의 우수성, 성과활용의 적절성)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표의 성격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세외수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국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에 실태에 대한 점검 및 평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국세외수입 중에 일부는 별도의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부담금의 경우 부담금평가, 연기금자산운용수입의 경우 기금운용평가, 복권판매수입의 경우 복권기금평가,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의 경우 책임운영기관평가 등을 통해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각 평가의 평가목적이 본고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세외수입의 징수율제고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와는 괴리가 있어 국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평가로서는 한계가 있음
 - 예를 들면, 부담금평가의 경우 각 부담금에 대하여 6개의 평가항목 (부담금 부과 타당성, 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부담금의 감면·면제 조항의 적정성,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권리구제절차 등 법률규정화 여부)

을 운용하여 본고의 논의방향과는 차이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기금운용평가의 경우에도 자산운용체계 및 정책, 자산운용 위험 및 성과관리, 자산운용 성과의 3개 영역에 대하여 평가가 수행되어 국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평가로서는 한계가 있음

□ 국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들 수 있음

- 2015년 시범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안전성, 효율성, 노력성 등 3개 분야 1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상이전수입이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평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표 대부분은 국세입징수와도 관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에 활용하고 있는 지표는 <표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음

- 2017년에는 이전과 같이 정량평가 방식에 ‘징수율 중점관리’라는 자치단체별 검토사항을 신설하였으며, 2018년에는 자치단체별 검토사항과 전국 지방세외수입의 변동을 분석하였음¹⁹⁾

19) 이상훈 외(2019)

<표 IV-1>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 지표(2015)

분야	지표 (가중치)	의 미	산정방식
안정성	① 지방세외수입 신장성(10)	당해연도와 직전3년의 세외수입 징수액 증가율의 차이를 산출하여 지방세외수입 징수액의 안정적 신장성을 측정	$\frac{\text{당해연도 세외수입 징수액 증가율} - \text{직전 3년 평균 세외수입 징수액 증가율}}$
	② 경상적수입 확충성(10)	당해연도와 직전3년의 1인당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액의 차이를 산출하여 경상적 세외수입 규모의 충분성을 측정	$\frac{\text{당해연도 1인당 경상적수입 징수액} - \text{직전 3년 평균 1인당 경상적수입 징수액}}{\text{직전3년 평균 1인당 경상적수입 징수액}}$
	③ 규모의 계획성(5)	당해연도의 당초예산액과 결산액을 비교하여 세외수입의 계획성을 측정	$1 - \frac{\text{당해연도 세외수입 결산액} - \text{당해연도 세외수입 당초예산액}}{\text{당해연도 세외수입 당초예산액}}$ * 임시적 세외수입 제외
효율성	④ 체납관리의 실효성(20)	당해연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액을 산출하여 현년도 징수율 측정	$\frac{\text{당해연도 징수액}}{\text{당해연도 부과액}}$
	⑤ 부과 정확성(5)	부과건 대비 과오납건의 건수와 금액을 산출하여 세외수입의 정확한 부과여부 측정	$1 - \{(\text{과오납건수}/\text{부과건수}) * 0.5 + (\text{과오납 금액}/\text{부과금액}) * 0.5\}$
	⑥ 시스템 활용성(5)	고지서 수납건수 대비 수기고지서 수납건수 비율을 산출하여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측정	$1 - \frac{\text{수기고지서 수납 건수}}{\text{총 수납 건수(전자+수기)}}$
	⑦ 조직의 완비성(5)	자치단체 세외수입 전담조직 설치 현황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체계 구축을 측정	세무부서내 세외수입 총괄 및 체납업무 수행 - 계 설치, 2명 이상 : 5점 - 체납담당자(체납액 이관, 체납처분 수행) : 2.5점 - 미설치 : 0점
노력성	⑧ 체납징수 노력성(20)	이월체납액 대비 당해연도 징수·결손액 비율을 산출하여 과년도 체납액의 정리 노력을 측정	$\frac{\text{세외수입 징수액} + \text{결손액(시효결손 제외)}}{\text{이월 체납액}}$
	⑨ 부과확충 노력성(10)	당해연도와 직전3년 평균 부과액 증가율을 비교하여 세외수입 확충 노력을 측정	$\frac{\text{당해연도 부과액 증가율} - \text{직전3년 평균 부과액 증가율}}{\text{직전3년 평균 부과액 증가율}}$ * 재산매각수입, 지난해도수입, 그외수입 제외
	⑩ 체납액 채권확보 노력성(10)	체납발생 건수 대비 압류 등 채권확보 건수를 산출하여 체납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측정	$\frac{\text{압류 건수(자동차 압류 제외)}}{\text{체납발생 건수}}$

출처: 류덕현 외(2017) 재인용

<표 IV-2> 2015~2018 (4년간)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비교

평가유형	분야	분석지표	분석기간	대상 세목	배점 (기준점 100)	대상회계	
2015 년도	정량평가 (총량지표)	안정성	지방세외수입 신장성	2010 ~2014	재산매각수입, 그 외 수입 제외	10	일반+ 기타특별 회계
			경상적 수입 확충성		경상적 세외수입	10	
			규모의 계획성	2014	전체 세외수입	5	
		징수관리의 실효성	20				
		부과의 정확성	5				
		시스템 활용성	5				
		노력성	조직의 완비성	2010 ~2014	세외수입 총괄부서 설치 여부 및 체납처리 업무 담당 여부	5	-
			체납징수 노력성		전체 세외수입	20	일반+ 기타특별 회계
			체납액 채권확보 노력성	자동차 제외 압류 채권 확보 건수	10		
부과확충 노력성	재산매각수입, 지난년도수입, 그 외수입 제외	10					
2016 년도	정량평가 (총량지표)	안정성	지방세외수입 증감률	2014 ~2015	재산매각수입, 그 외 수입 제외	10	일반+ 기타특별 회계
			경상적 세외수입 신장성	2012 ~2015	경상적 세외수입 중 매각사업수입, 이자수입 제외	10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 안정성	2013 ~2015	경상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제외	10	일반+ 기타특별 회계
		효율성	규모의 계획성	2015	전체 세외수입	10	
			징수관리의 실효성			20	
			정보시스템 활용성		정수교부금, 이자수입 제외	5	
		조직의 완비성	세외수입 총괄부서 설치 여부 및 담당자의 업무 담당 기간		5	-	
		노력성	요율 현실화	2013 ~2015	2013~2016년 사이 재산임대수입(2개), 사용료수입(5개) 및 수수료수입(3개) 등 10개 목	5	일반+ 기타특별 회계
			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4 ~2015	전체 세외수입	15	
채권 확보 노력도	2015		10				
2017 년도	정량평가 (총량지표)	신장성	지방세외수입 증감률	2015 ~2016	재산매각수입, 그 외 수입 제외	20	일반+ 기타특별 회계
			경상적 세외수입 신장성	2013 ~2016	경상적 세외수입 중 매각사업수입, 이자수입 제외	20	일반회계
		징수관리	징수관리의 실효성	2016	전체 세외수입	25	일반+ 기타특별 회계
			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5 ~2016		20	
		정책관리	시스템 표준화율	2016	세외수입 총괄부서 설치 여부 및 담당자의 업무 담당 기간	5	-
			조직의 완비성			5	
		지자체별 검토사항 (평가대상 아님)	징수율	2016	광역: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6개 세목 기초: 옥외광고물법위반과태료 등 6개 세목	-	일반+ 기타특별 회계
부과금액	-						

	평가유형	분야	분석지표	분석기간	대상 세목	배점 (기준점 100)	대상회계
2018 년도	정량평가 (총량지표)	재화 및 서비스 제공	실질재산임대수입 신장성	2014 ~2017	공유재임대료	25	일반+ 기타특별 회계
			실질사용료 신장성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입장 료수입		
			실질사업수입 신장성		사업수입		
		공익달성 및 질서유지	과태료 징수 노력도	2016 ~2017	과태료	60	
			과징금 징수 노력도		과징금		
			이행강제금 징수 노력도		이행강제금		
			부담금 징수 노력도		부담금		
		자금의 운용	이자수입 신장성	2014 ~2017	이자수입	5	
		예산 및 법령의 운용	징수교부금 신장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0	
		지자체별 검토내용 (평가대상 아님)	총량분석 지표	지방세외수입 징수액 증감률	2013 ~2017	전체 세외수입	
	미수납액 축소 노력도						
	제도 개선사항		개발부담금	2016 ~2017	개발부담금		
			건축법 이행강제금		건축법 이행강제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 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정책운영 개선사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출처: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3. 징수 및 체납 관련 동기 부족

- 국세외수입의 체납률이 높은 것은 각 부처의 징수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열심히 하
여 징수율을 제고해야할 동기(보상 또는 불이익)가 미약하며, 체납자의 입장에서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미흡하여 납부의 동기가 미약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이 요구됨

가) 징수자의 동기

- 국세외수입의 경우 박광배(2017)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귀속되는 구조이므로 지방세외수입과 같이 추가적인 징수가 세출의 증대로 이어질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징수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 또는 인사상의 혜택 등이 제공되어야 징수율 제고를 위한 동기가 부여될 수 있으나, 현재 그와 같은 효과적인 보상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 현행 제도 중 보상체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예산성과금제도로 1998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음

-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국가재정법 제49조에 근거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지급 요건은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경우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정원감축 또는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남게 된 경우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거나 제도 개선 등으로 국고의 수입이 증대된 경우 등
 - 지급 대상은 담당공무원 및 예산낭비 신고자이며,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중앙관서 소속공무원 및 다른 중앙관서 소속공무원
 - 중앙관서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및 예산낭비 신고자 등
 - 예산성과금 등급 및 지급액 기준은 다음의 <표 IV-3>과 같음

<표 IV-3> 예산성과금 등급 및 지급액 기준

구분	평가점수	지급액
I 등급	13점 이상	60백만원
II 등급	12점	50백만원
III 등급	11점	35백만원
IV 등급	10점	20백만원
V 등급	9점	10백만원
VI 등급	8점	6백만원

- 2019년 하반기에는 14개 부처에서 재정개선효과가 총 4,698억원에 달하는 74건의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신청하였으나, 이 중 28건의 사례에 대해서만 예산성과금 지급을 결정되었음
 - 지급을 결정한 사례의 경우, 총 1,736억원 규모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28건 사례에 대하여 2억6,3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재정개선 규모 대비 0.15% 수준 이었고, 건당 평균 9백4십만원의 예산성과금이 지급되었음
 - 이상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산성과금의 선정건수는 부처 신청 대비 37.8%에 불과하고, 예산성과금 지급규모도 재정개선 규모 대비 0.15%이며 부처가 신청한 재정개선효과 4,698억원 대비 0.06%에 불과하여 담당공무원의 동기를 유발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임을 알 수 있음

나) 체납자의 동기

- 체납자의 입장에서 보면,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크지 않아 체납금을 납부할 유인이 미약한 실정임
 - 국세는 조세채권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이를 근거로 제재수단의 활용범위가 넓으나, 국세의 수입의 경우 2013년 체납자 신용정보제공제도가 국가채권관리법에 도입되었으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간접적인 강제수단의 활용도 미흡한 실정임
 - 다음 <표 IV-4>는 현행 법령상 간접강제수단의 도입 현황을 보여줌

<표 IV-4> 현행 법령상 간접강제수단의 도입 현황

간접강제	내용	국세	국세 외수입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신용정보 제공	신불자로 분류→이자율상승, 신용카드 사용정지등	○	△	○	○
관허사업 제한	음식점 인허가, 자격증면허, 등록 등의 갱신허가 제재	○	X	○	○
출국금지	국외도피, 해외여행 등 부유한 생활의 영유를 제한	○	X	○	X (국회에서제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5억원 이상 체납액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보에 게재	○	X	○	○
차량등록 번호판 영치	체납자 실생활에 직접 제재 지자체 적극 활용	X	△	○	○
납세완납 증명	국가지자체에게 대금 수령시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	○	X	○	○

주: 1. 국세외수입 중 일부 사회보험성 기금은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제공 시행되고 있음.
2. 차량등록 번호판 영치는 국세외수입 중 일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지방세법상 자동차에 시행.

출처: 박광배(2017) 재인용

4. 관리 역량의 부족

- 국세외수입의 징수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채권관리법과 국고금관리법에 근거하여 중앙관서에는 총괄채권관리관, 출납관리관, 수입징수관이 지정되어 있음
 -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들의 사무범위가 포괄적으로 채권과 국고금 전반에 걸쳐있어 특별히 국세외수입의 관리에 업무의 초점을 두고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국세외수입 담당자의 대부분이 세무직이 아닌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직 공무원이어서 체납 발생 시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가 시행되기 어려운 실정임
- 지방세외수입도 중앙정부의 경우와 유사한 상황임
 - 2016년에 세외수입 전담조직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이 총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87개로 약 36%에 해당하였으며, 2019년에는 62개로 약 26%에 이르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외수입 총괄 및 체납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와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을 보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표 IV-5> 세무부서내 세외수입 총괄 및 체납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미설치 지역

(단위: 개, %)

구분	미설치 지역		설치지역 수(B)	지자체 계 (C=A+B)	미설치 지역 비율 (A/C)
	지역명	수(A)			
서울	-	-	26	26	0.0
부산	남구	1	16	17	5.9
대구	-	-	9	9	0.0
인천	옹진군	1	10	11	9.1
광주	-	-	6	6	0.0
대전	-	-	6	6	0.0
울산	북구	1	5	6	16.7
세종	-	-	1	1	0.0
경기	동두천시, 양평군, 구리시, 여주시, 연천군	5	27	32	15.6
강원	인제군, 정선군	2	17	19	10.5
충북	본청,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증평군	8	4	12	66.7
충남	계룡시, 서천군, 홍성군,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9	7	16	56.3
전북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6	9	15	40.0
전남	담양군, 구례군, 보성군, 영암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7	16	23	30.4
경북	봉화군, 울릉군, 군위군, 고령군, 영양군, 영천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청도군, 성주군, 예천군, 울진군	14	10	24	58.3
경남	김해시,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창원시, 의령군, 고성군, 거창군	8	11	19	42.1
제주	-	-	1	1	0.0
계		62	181	243	

출처: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재인용

□ <표 IV-6>은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징수액 실적이 평균 35%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표 IV-6> 세외수입 전담조직 설치 효과

자치단체	인력	설치시기	체납징수 실적(백만원)						징수액 증가율
			전년도(n-1)		당해연도(n)		다음연도(n+1)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서울시 중구	4	'11.3월	36,039	2,777 (7.7)	34,637	3,861 (11.2)	28,112	3,946 (14.0)	42%
부산시 해운대구	5	'12.3월	24,538	1,102 (4.5)	21,743	1,764 (8.1)	17,850	2,159 (12.1)	96%
평택시	5	'10.1월	26,544	2,747 (10.3)	28,844	3,655 (12.7)	31,176	4,305 (13.8)	57%
포항시	6	'12.9월	25,108	2,026 (8.1)	23,958	4,537 (18.9)	19,769	4,546 (23.0)	124%
용인시	16	'12.9월	120,496	12,401 (10.3)	120,921	14,560 (12.0)	107,952	18,208 (16.9)	47%

출처: 류덕현 외(2017) 재인용

- 또한 원천징수가 가능한 국세와 달리 국세외수입의 경우 체납이 발생해도 소관부처는 이를 추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징수역량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국세의 경우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체납자의 재산 조사 및 압류·매각 절차를 통한 징수가 가능한 반면, 국세외수입의 경우 체납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 국세외수입 징수역량을 저해하는 또 다른 문제는 체납자의 소득, 재산 등 납부능력에 대한 정보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되지 않아 체납징수의 실효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임

5. 정보시스템의 미비

- 국세외수입의 통합된 부과·징수시스템이 미비하여 징수하는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납부자의 입장에서는 각각 별도의 시스템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표 IV-7>는 국세외수입 별로 각기 다른 징수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같이 통

합되지 않은 개별 징수시스템의 운용으로 국세외수입 징수의 비효율성이 축소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지방세외수입의 경우 징수기관을 각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조회·납부시스템은 위택스로 통합되어 있어 국세외수입과 같은 징수시스템의 비효율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표 IV-7> 국세외수입 성질별 징수시스템

수입항목	징수기관	조회·납부시스템
사회보장기여금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재산수입	각 부처 및 캠프	인터넷 포털 無/ 지로발부고지
과태료	경찰청 등	교통법칙금 인터넷 조회·납부(e-fine)
과징금	공정위 등	인터넷 포털 無/ 지로발부고지
벌금·과료	법무부	형사사법시스템
지방세/세외수입	해당 지자체	위택스(We-Tax)

출처: 류덕현(2017)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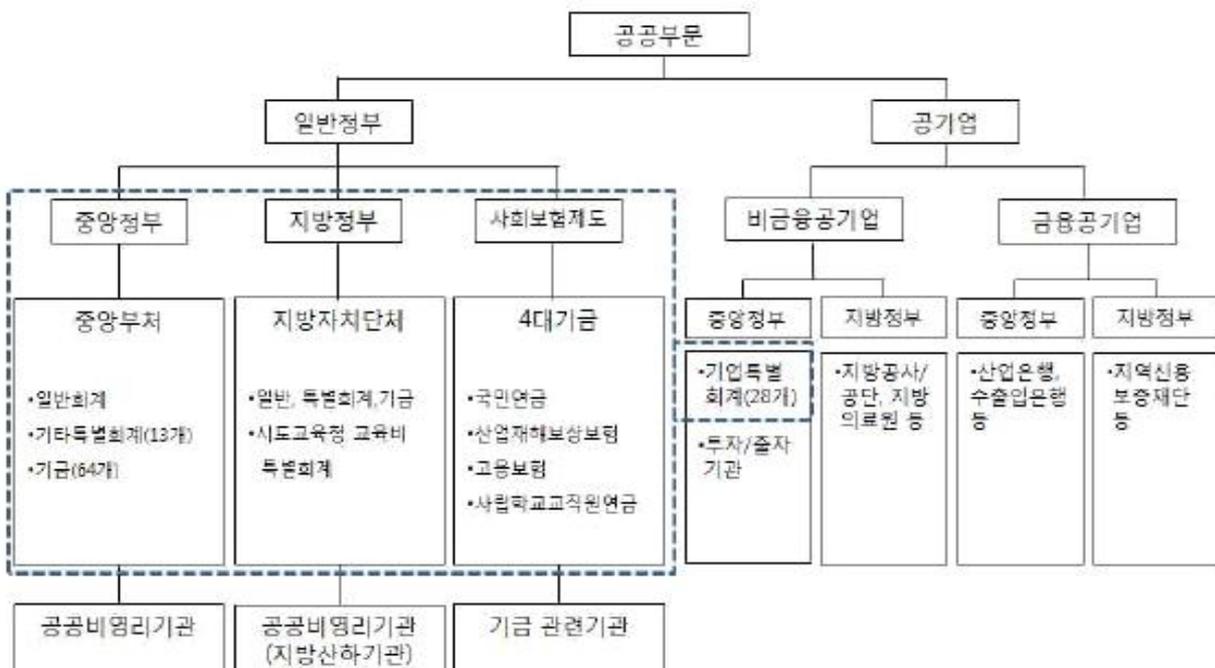
- 국세외수입의 경우 일선 중앙관서 공무원(채권관리관)이 수백 개의 법률을 근거로 각기 부과 및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다수의 부처에 체납이 있는 다중체납의 경우 고액체납 및 상습체납 등이 발생하고 있어도 체납 정보에 대한 각 징수기관 간 정보가 통합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처가 매우 미흡한 상황임
 - 한 부처 내 A지방청과 B지방청이 (주)○○건설에 대한 채권을 각각 가지고 있었으나, 지방청간 체납처분(압류)을 위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사례²⁰⁾
 - 지방세외수입의 통합징수시스템인 위택스와 같은 통합시스템을 국세외수입에도 도입하여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국세외수입에 대한 통합된 징수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와 같이 신용정보제공(체납정보의 금융기관 제공), 관허사업제한 관련정보 제

2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12.27)

공, 명단공개(고액 및 상습채납자), 납세완납증명제도 운영 등의 다양한 간접강제수단을 보유하여 징수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기획재정부는 예산과 회계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dBrain(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dBrain에서 포괄하는 재정범위는 다음 <그림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음

<그림 IV-2> dBrain의 재정범위



출처: 류덕현(2017) 재인용

-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dBrain은 국세외수입의 관리 및 징수를 담당하는 부처 또는 각 부처의 자체 개발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기획재정부는 2019년 7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출범하고 현재 dBrain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재정업무 효율성 제고, 재정정책 의사결정 역량 강화, 재정·수혜정보 통합공개, 연구자일반국민 재정정보 활용 개선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새로운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IV-8>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시 주요 개선 사항

	현 행 (Before)	개 선 (After)
속성정보 분석 * 속성 예시 : 안전, 지진, 일자리, 청년, 저출산, 4차산업혁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분석 곤란 - 속성별로 필요시 <u>전부서에서 취합하여 엑셀로 수작업</u> -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 개입 등 신뢰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성정보 분석 용이 - 속성별로 시스템에서 <u>즉시 자료 조회·출력 가능</u> - 예산편성시 특정 정책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업그레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유지보수만 가능 - 14년전 구축된 시스템으로 <u>새로운 기능 추가 및 IT 신기술 도입 곤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기능 추가 용이 - 재정기능별 모듈화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IT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기능 도입이 용이 - 정책수요에 대응한 <u>새로운 예산편성 틀을 쉽게 도입</u>
화면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인치로 고정(확대 불가) - 화면크기 고정으로 <u>예산작성시 업무능률 크게 저하</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면 확대·조정 등이 가능 - 화면크기 조정, 복수의 작업시트 표출 등으로 업무생산성 향상
부담금, 채권, 세외수입 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업무를 수기로 관리 - 업무 신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업무영역 전산화 - 유용한 재정정보의 체계적 관리
재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과 지방재정 및 공공기관 간 재정정보 연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방·공공기관 등 국가전체의 재정정보 연계 관리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9.7.23)

-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의 주요 개선 사항 중 ‘부담금, 채권, 세외수입 등 관리’ 항목을 보면, 현재 수기로 처리 중인 국세외수입, 부담금 관리 등을 시스템에 추가하여 재정업무의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이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임

V. 국세외수입 관리 · 개선방안: 법 · 제도 과제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세외수입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함
-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세외수입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먼저, 국세외수입의 관리에 있어서 지향하여야 할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함
 - 그 다음으로, 국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구체적인 방안을 나열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세외수입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기본방향 및 우선과제

- 국세외수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앞에서 강조하였듯이, 국세외수입은 국가 전체 재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국세외수입은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V-1> 국세외수입 결산 추이 및 전년 대비 증가율: 2011~2019

(단위: 조원,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세외수입	130.5	138.6	149.9	150.9	153.9	159.1	165.1	171.2	179.3
	-	6.2	8.2	0.6	2.0	3.4	3.7	3.7	4.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재구성

- 이와 같은 국세외수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것

이 사실임

- 국세외수입의 총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을 뿐 아니라,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필요한 경우 징수현황 점검이 이루어지는 등 중요 세입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재정 전체 차원에서 국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 미수납 관리를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 관리법의 정비와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미수납이 발생하는 주요항목 중 하나인 과태료가 국가채권관리법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함

○ 또한 미수납이 발생하는 항목들은 제재·부과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과 같이 유사한 성격의 항목들을 규명하고 체납관리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미수납 관리에 있어 어려운 점이 체납자 재력부족, 거소불명, 관계 기관에 대한 정보부족 등이므로 체납관리에 대하여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고 국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더불어 세수에 버금가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세외수입 관리가 절실함

○ 관리법 정비와 정보시스템의 구축 외에도 전담 조직 설립 및 인력 확충, 적절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 환류시스템 구축 등 국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이러한 개선은 국세외수입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가 있더라도 제도가 미비할 경우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워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구체적 개선방안

가) 관련법체계의 정비

□ 미수납이 발생하는 항목들은 경상이전수입의 가산금,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등 제재·부과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해당항목들은 예산액 대비 실적은 양호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미수납이 발생하는 항목들 중 제재·부과적 성격을 가진 항목들을 묶어 관리법을 제정하고,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의 명문화하며, 징수권자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서는 효율적 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징수의 우선순위, 과세정보의 요구·이용, 대금지급정지, 관허사업의 제한, 체납자의 명단공개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서는 체납절차가 명문화되어 있음
 - 절차의 명문화를 통해서 제재·부과적 성격을 가진 항목들의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으며 징수에 관한 정보 이용과 간접 강제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됨
 - 미수납 사유의 중요한 부분인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에 관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위한 권한 부여가 필요하며, 수납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불납결손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미수납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규정을 제정해야 함
- 다른 항목들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국세외수입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별도의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함
 - 국세외수입은 수많은 중앙관서 공무원(채권관리관)이 수백개의 법률을 근거로 각기 부과·징수하고 있어 체납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큰 어려움이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은 개별법 별로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서 그 내용의 통일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실무상 적용을 위한 규정도 미비하며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장치가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 평가됨²¹⁾
 - 2013년 「지방세외수입법」 제정 이후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액이 2014년 514억원, 2015년 93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 체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

21) 마정화(2015)

목들의 징수율이 증가한 것은 국세외수입 통합법 제정의 근거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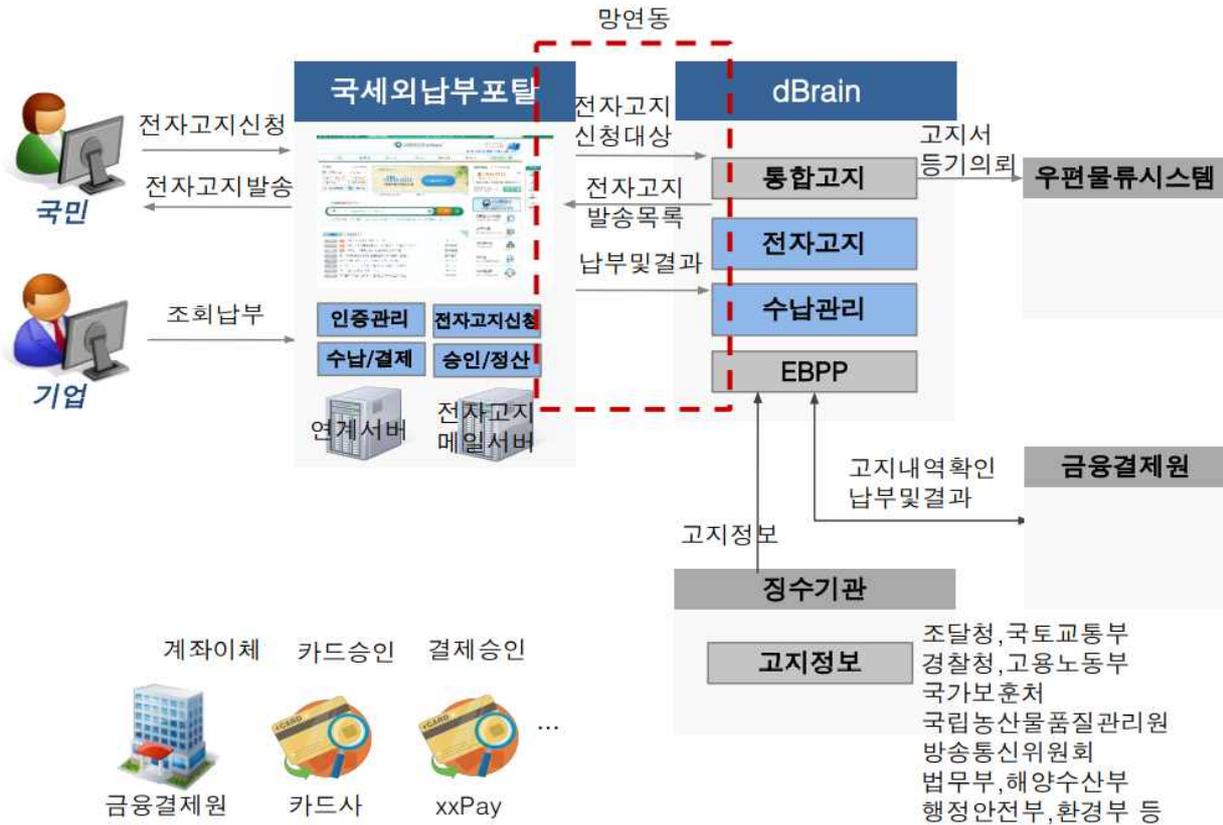
나) 정보시스템의 구축

- 부담금 징수기관과의 인터뷰에서 담당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정보공유의 어려움을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제시함
 - 개별부처마다 국세외수입이 관리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징수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에서는 고지·납부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국세외수입 납부포털(인터넷망)을 구축중이나 이는 납부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부처 간 정보 공유에 이견이 있다는 점에서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처 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함

- 정보시스템: 국세외수입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기획재정부가 개별부처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음
 - 다양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국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됨
 - 궁극적으로 dBrain과 연계하여 중앙정부의 포괄적 재정정보를 생산할 필요가 있음

- 납부시스템: 전자고지를 활성화하고 국세외수입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대국민 접근 가능한 통합 포털 구축
 - 국세는 Home-tax, 지방세 지방세외수입은 We-tax(E-tax) 등 별도의 납부 포털이 있으나 국세외수입 납부를 위한 포털은 부재하여 금융결제원 또는 국고수납대리점을 통해서 납부해야 함
 - dBrain이 국세외납부포털의 부과·징수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그림 V-1> 국세외수입 납부포탈 신규구축 방안 및 dBrain 연계 방향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외수입 납부포탈 사업계획서

- 정보시스템과 납부시스템의 구축 및 통합을 통해 각 부처가 관리하는 국세외수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음
 - 한 개인이 여러 항목을 체납하는 경우 이를 종합하여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으므로 국세외수입의 징수를 확보하며 법적 엄격성을 유지함
 - 시스템이 개인의 소득, 자산자료와 연계될 경우 징수 효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체납자로 하여금 본인의 체납 사실과 체납액을 일괄적으로 조회하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국세·지방세 고지서 발송 시 국세외수입 체납을 함께 고지하는 방안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체납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행정안전부도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부과·징수를 위해 현재 산재되어 있는 개별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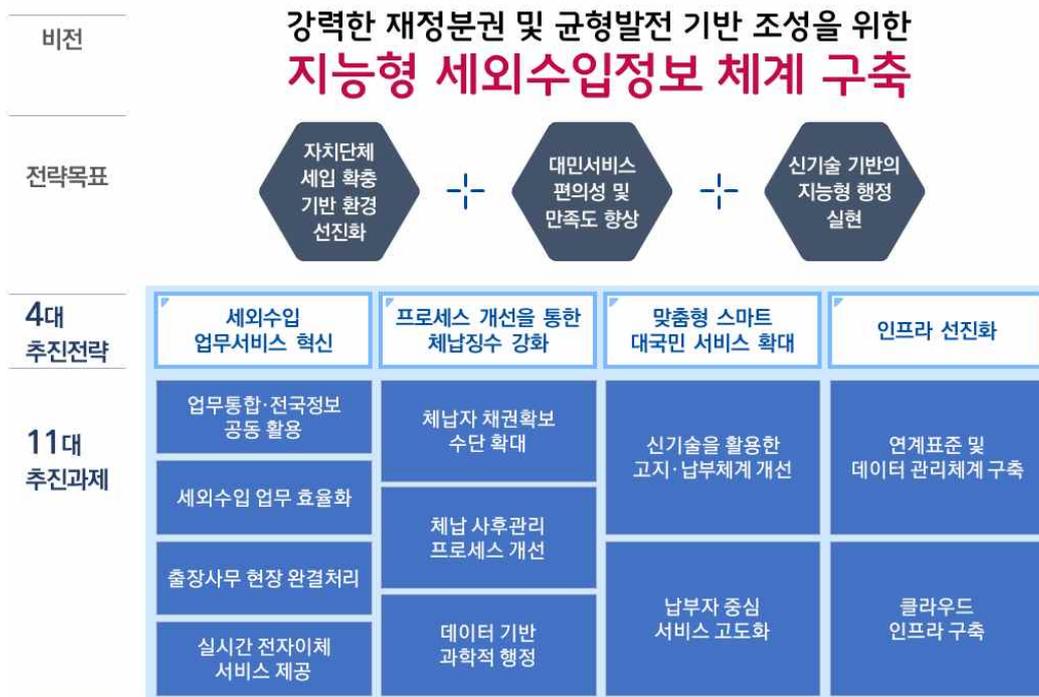
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며 2단계 사업에 착수하였음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포괄하여 부과·징수관리 및 납부 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임
- 지방세외수입의 경우 1차 사업에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설계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수입 중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관리대상이며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의 세외수입(200장)이 대상임

□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추진 경과를 분석하고 해당 사업 실무자를 인터뷰한 결과 국세외수입시스템 구축에 있어서의 우선적 과제는 다음과 같음²²⁾

- 각 부처별로 분산 운영 중인 산재된 업무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국세외수입 부과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

<그림 V-2> 지방세외수입 정보화 전략체계도



자료: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

22)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상세 추진요건 분석을 별도로 첨부하였음

- 세입과목 분류체계의 표준화·간소화 및 유사·중복 세입과목 정비를 위한 방안 마련
- 대장관리의 원칙 수립 및 통·폐합
- 납부자의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세입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설계
-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에 관하여 부동산 압류, 경·공매 등을 시스템화·자동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
- 위의 과정을 위한 업무 연계 및 법적 체계 정비

□ 국세외수입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정량적 효과) 전자고지로 행정비용 절감, 단일시스템 사용으로 징수업무의 효율성 증대, 통계자료 등 정보 취합 자동화, 체납관리 강화를 통한 국세외세입 증대
- (정성적 효과) 표준화된 업무절차로 인한 징수 효율성 제고, 전산화 및 자동화를 통한 체납액 채권 확보의 용이, 전자고지를 통한 국민 납부 편의의 증가, 취합 정보의 정확성 증대로 인한 정책 결정 기반 강화

□ 현재는 분리하여 운영 중인 국세외수입과 지방세외수입 관리시스템을 통합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세외수입 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다) 조직 및 인력 확충

□ 기획재정부에 국세외수입 총괄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예산실 예산정책과(추계·분석에 있어서 조세수입, 차관수입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세제실 조세분석과(국세와 각종 부담금 및 세외수입간의 조정업무 총괄) 국고국 국고과(국가채권 관리의 총괄), 국고국 출자관리과(정부세외수입 수납관리 및 점검)에서 국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각 과에서 국세와 함께 국세외수입을 관리함
- 따라서 충분한 인력이 배정되기 어려우며 국세외수입의 항목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총괄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전담 조직이 필요함

- 총괄전담조직은 세입 항목 관리, 징수율 관리, 요율 변동 검토, 국가 통계 및 정보화 관리, 운용평가 총괄을 담당해야 함

□ 각 부처에서도 국세외수입의 징수를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함

- 국가채권관리법과 국고금관리법에 근거하여 총괄채권관리관, 출납관리관, 수입징수관이 지정되어 있으나 사무범위가 채권과 국고금 전반에 걸쳐있어 국세외수입의 관리에 업무의 초점을 두고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국세외수입 담당자의 대부분이 세무직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체납 발생 시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가 시행되기 어려움
- 따라서 국세외수입 항목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의 확보와 담당 조직이 필요함

□ 지방세외수입과 관련된 조직과 인력도 미비된 경우가 다수이나 전담조직 설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2016년에 세외수입 전담조직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이 총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87개로 약 36%에 해당하였으며, 2019년에는 62개로 약 26%에 이르고 있음
-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징수액 실적이 평균 35%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큰 시사점을 주고 있음

□ 더불어 중앙예산기관인 기획재정부에는 총괄전담조직에 중앙관서들의 국세외수입 관리를 총괄하는 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음

라) 환류시스템 정비

□ 국세외수입 항목을 담당하고 있는 각 부처로 하여금 국세외수입관리계획을 보고하도록 하여 국세외수입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체계적인 환류시스템을 구축함

- 관리계획안에서는 국세외수입 전망과 전년도 체납액 및 징수율, 당해 연도 관리 계획

및 결손처리 등을 기술하도록 함

- 더불어 국세외수입을 통합하여 평가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는 환류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국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들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상이전수입이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평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표 대부분은 국세입징수와도 관련이 높음

- 평가는 관리 계획 이행 여부, 실적 개선 여부, 성과를 통해 이루어짐
 - 관리계획안에서 제시하였던 당해 연도 관리 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실제로 실적이 전년도에 비하여 개선되었는지, 징수율 등의 성과가 다른 부처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함
 - 다만 평가 대상은 실익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지표는 항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되어야 함

마) 적절한 인센티브 체계의 구축

- 국세외수입에 대한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참가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적절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수적임
 - 국세외수입을 관리하는 담당자와 국세외수입을 납부자하는 사람을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함

- 국세외수입의 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국세외수입평가에 따

른 우수 부처 예산 증액을 통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

- 국세외수입의 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징수업무에 임하도록 금전적 보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국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금전적 인센티브로는 예산성과금제도가 유일함
 -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제도의 활용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국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충분한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국세외수입의 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충분하고도 직접적인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상의 혜택을 분명히 하여야 함
 - 아래에서 언급되는 국세외수입의 관리에 관한 환류시스템이 정비되면, 이에 기반한 평가를 바탕으로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 국세외수입 평가 후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차등적으로 예산을 추가 배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국세외수입 납부자를 위한 납부포털 구축 및 불이익 조치 강화

- 우선적으로 국세외수입을 통합하여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에서는 고지·납부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국세외수입 납부포털(인터넷망)을 구축중임
- 그러나 납부의 편의성 제고만으로는 체납액이 줄어들기 어려우므로 체납자에 대한 추적 및 불이익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국세외수입을 체납하는 경우의 가산금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의 경우에는 조세포탈에 준하는 제재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강제를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체납자 정보 공유와 부과·징수체계의 통합이 필요함
 - 이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는 간접강제수단이 각각의 국세외수입 항목별 주관부처 소관

사항이므로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에 반영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국세외수입포털은 납부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으로 부처 간 정보공유는 부처간 이견이 있다는 점에서 협의 및 방향 개선이 필요함

3. 장기적 관점의 방안

□ 국세외수입의 관리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징수체계의 통합임

- 징수업무는 활용하여야 할 정보가 다양하고, 이들에 접근할 수 있는 통합적 권한이 필요함
-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많은 기관과 담당 공무원에 주어지게 되면 개인정보의 보호 측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커짐
- 뿐만 아니라, 징수업무는 회계 관련 지식 등 전문적 영역에 해당되므로, 이에 특화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함
-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징수업무는 하나의 전문기관에서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함

□ 징수업무 통합의 기대효과

- 징수업무를 하나로 통합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담당 효율성과 효과성의 제고임
 - 업무의 통합을 통한 전문성 제고와 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납부자의 입장에서 순응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됨
 - 현재는 납부자가 납부의 종류에 따라 각각 납부를 하여야 하는 관계로 순응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모든 납부가 통합될 경우 시간과 노력의 절감으로 순응비용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VI. 결론

- 국가총수입 대비 국세외수입의 비중은 매년 약 40% 내외로 국세외수입은 국가재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중앙정부의 세외수입의 비중은 2011년 OECD 단일형 국가 중 4번째, 2012년에서 2018년까지 통계를 제공하는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음

- 국세외수입은 조세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징수와 체납관리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바, 현황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 관리법 미비: 국가채권관리법의 일부 항목 배제 및 개별법령에 근거한 한 관리로 인한 비효율성
 - 환류체계의 미비: 국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평가 체계 불충분
 - 징수 및 체납 관련 동기 부족: 예산성과금 제도의 한계(징수자), 체납에 따른 불이익 적음(체납자)
 - 관리 역량의 부족: 총괄관리조직 부재, 추정 권한 제한
 - 정보시스템의 미비: 통합된 부과·징수시스템 미비, 징수기관 간 정보 단절

- 이와 같은 문제를 바탕으로 국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출한 법·제도적 과제는 다음과 같음
 - 관련법체계 정비: 미수납 관리를 위해 제재·부과적 성격의 항목들을 묶어 우선적으로 관리법을 제정. 장기적으로 국세외수입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법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국세외수입의 항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통합법 제정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함

- 정보시스템의 구축: 국세외수입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납부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에서는 현재 고지·납부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국세외수입 납부포털을 구축중이나 정보 공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
 - 조직 및 인력 확충: 기획재정부에 국세외수입 총괄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 설치 및 각 부처에 국세외수입 징수를 담당하는 조직 설치
 - 환류시스템 정비: 국세외수입관리계획 보고 및 국세외수입평가 등 환류 시스템 정비
 - 적절한 인센티브 체계의 구축: 국세외수입평가에 따른 예산 증액(징수자), 인사상 혜택(징수자), 납부포털 구축(납부자),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납부자)를 통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
- 장기적으로 국세외수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과 더불어 전문기관에서 징수업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별첨]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상세 추진요건 분석

-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년부터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국세외수입 시스템 구축에 유의미하며, 분석 결과에 따른 우선적 과제는 본문 V-2-나)에 수록하였음.
- 별첨에서는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세부적인 추진요건을 수록하고, 국세외수입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연차별 사업 범위>

'18년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기반조성
계획수립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TF 구성.운영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자치단체 소요예산 편성 안내
'19년(1차)	응용기능 구축(분석.설계) 및 인프라 구조 설계
1차 (분석.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시스템 응용기능 분석.설계 ▪ 데이터 표준화 및 모델링 ▪ 클라우드 인프라 아키텍처 설계(지방세 공동활용) ▪ 유관시스템 연계 협의 및 연계 방안 수립
'20년(2차)	응용기능 구축(구현.시험) 및 인프라 구축
2차 (구현.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시스템 응용기능 구현.시험 ▪ 유관시스템 정보연계 및 통계시스템 구축 ▪ 응용시스템 성능시험 ▪ 신기술(빅데이터, 인공지능) 적용 콘텐츠 기획
'21년(3차)	신기술 적용 및 전국 확산.보급
3차 (확산.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적용 및 부가서비스 공동활용체계 구축 ▪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 데이터 전환프로그램 개발 및 자치단체 데이터 이관 ▪ 시범운영 및 전국 확산
'22년 이후	시스템 안정화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용시스템 및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최적화 ▪ 자치단체 교육 등 운영지원

자료: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

□ 세외수입 업무시스템 통합

- 표준세외수입 시스템, 서울행정, 자치단체 개별시스템 등 분산된 업무시스템 기능을 통합하고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로 재설계
- 세외수입 업무 자동화·간소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 적용
 - 세입관리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기능을 분석·설계하여 대장관리 통·폐합, 세입과목 분류체계 표준화·간소화, 압류 및 경·공매 자동화, 체납 사후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이루고자 함
- 국세외수입도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하기 위하여 국세외수입 사무를 분석하고 세입과목 분류체계를 재정비해야 함

□ 대장관리 원칙 수립 및 세입과목 분류체계 표준화·간소화

- (대장관리) 항목, 사용 지자체, 세목, 구조 등의 분석을 통해 대장 신설·통합·폐지의 관리 원칙을 수립하고 동일 업무 처리 시 동일 관리 항목으로 하나의 대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표준 프로세스 수립
- (세입과목) 표준화·간소화를 위한 통·폐합 기준 수립 및 유사중복 세입과목 정비
 - 무분별한 코드 생성을 방지하고 세입과목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계화 된 새로운 분류체계 재정립
- 국세외수입도 대장관리, 세입과목 분석·재설계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용자 친화적 업무포털 구축

- 부과고지·수납 등 업무절차 중심으로 시스템, 메뉴, 분류체계 설계
- 업무담당자별 To-do(나의 할 일) 제공과 클릭 시 해당 화면으로 전이되도록 설계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연계서비스(Open API)를 고려하여 세입과목별 법령근거를 매핑하고 사용자별 업무처리 시 필요한 법령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
- 국세외수입도 업무 담당자 친화적인 포털을 구축하고 매뉴얼을 배포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국세외수입의 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업무의 순환으로 인해 전문성은 저하되는 상황에서 업무 절차를 파악하기 위한 시간 낭비를 줄여 효율적인 징수를 도울 것으로 생각됨

□ 납부자 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체납자 재산 일괄 조회

- 자치단체별 분산되어 중복관리 중인 납부자 정보 단일화 분석·설계
- 업무담당자가 체납자의 재산(지방세 과세정보 : 부동산, 건물 등)을 전국 일괄 조회하고 압류 및 결손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설계
- 국세외수입의 경우 각 부처별로 분산된 납부자 정보를 단일화하고 체납자 재산에 대한 정보를 부처 간 공유함으로써 국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적정 수준으로 부과함으로써 국세외수입 관리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음

□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및 자동화

- 징수감액·환급 등 결의 및 결재처리를 개선하여 일괄결의 처리 기능을 하나의 메뉴로 통합 관리하되, 결재대상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선택하여 결재할 수 있도록 편의 기능 설계
- 경·공매관리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하여 체납관리의 효율성 제고

<경·공매 프로세스 자동화 연계 >



자료: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

- 국세외수입도 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자동화하여 업무 담당자들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부과·징수·채납관리 담당자가 달라 발생하는 업무의 분절성을 보완할 수 있음

□ 통합 고지 및 납부, 고지 안내 및 수납처리 서비스 선진화

- 동일 납부자에게 세입과목 건별로 발송하던 고지서를 여러 개 세입과목을 묶어서 통합 고지 및 납부할 수 있도록 기능 설계
- 다수 및 분납 채납 건에 대한 통합 고지 및 수납 기능 설계
- 온라인 납부용 고지서 양식 마련, 복수의 가상계좌 표시, 인터넷 납부방법 안내 등을 통한 납부체계 개선
- 국세외수입 납부 포털을 일원화하고 통합 고지를 가능하게 하여 납부액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납부방법의 제공을 통해 국세외수입 징수를 용이하도록 함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총수입 결산 분석」 각 연도.
- 기획재정부(2016), "국세외수입 관리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
-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각 연도.
- 권세훈(2019), "국세외수입징수제도의 통합에 관한 소고", 「법학논고」, 0(64).
- 류덕현 외(2017), "국세외수입 관리방안", 「한국경제포럼」, 10(3).
- 마정화(2015), "기획논단: 세외수입 징수법제 발전방향", 「지방세포럼」, 21(-).
- 박광배(2017), "국세외수입 위임징수를 통한 자치단체 재원확충 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외수입보고서.
- 조임곤(2013), "지방세외수입 확대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주만수·주운현(2015), "지방세외수입 신규 수입원 발굴에 관한 연구: 지방세외수입 발굴의 원칙 및 기준정립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차보고서.
- 최원구(2015), "일본의 지방세외수입 법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차보고서.
- 최원구 외(2017), "일본의 지방소비세", 「지방세포럼」, 32(-).
- 한국법제연구원(2010),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의 징수절차에 관한 통합법 제정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각 연도.
-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
-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각 연도.

열린재정: <https://www.openfiscaldata.go.kr/portal/main.do>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United States Census Bureau

